

군 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587호 2020. 10. 30.(금)

조 례

제2701호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1
제2702호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9
제2703호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제2704호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제2705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15
제2706호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22
제2707호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제2708호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 27
제2709호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0
제2710호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 ····· 32
제2711호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38

공 고

제2020-1846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46
제2020-1953호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운행제한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 48
제2020-1958호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49
제2020-1959호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63
제2020-1966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공고 ····· 68
제2020-1967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 78
제2020-1970호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구내용 및 청구인명부 열람 공표 ····· 83
제2020-1975호 홍천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8
제2020-1978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123
제2020-1990호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125
제2020-1999호 아동급식카드 사업 수행 업체 모집 공고(안) ····· 127
제2020-2000호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31

회람									

발행 : **홍천군 기획감사담당관**

(전화 : 033-432-7801, FAX:033-430-2019)

조례

홍천군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0년 10월 30일

홍천군 조례 제2701호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의회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란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연구활동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동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등록(변경)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 등 지원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담당한다

제5조(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단체가 활동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연구용역은 지원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별 연구용역비는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하고, 의원간담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승인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구성원(명)

연구단체	성 명	서 명	비 고

※ 붙임: 회칙 또는 정관 (있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홍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연구활동내용 등 세부계획			
정 책 개발비	소 요 액	금 원(금 원)	
	용역목적		
	산출내역		
특이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등록번호	단체의 명칭	회원수	대표자 성 명 (성별)	회원 성명 (성별)	등록일	지원금액(용역비)	해산일 (등록취소일)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table>
<tr><td>연구단체명</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연구주제
변경 내용</td><td rowspan="2">당초</td><td>연구주제</td><td></td></tr>
<tr><td>연구목적</td><td></td></tr>
<tr><td rowspan="2">변경</td><td>연구주제</td><td></td></tr>
<tr><td>연구목적</td><td></td></tr>
<tr><td>연구활동계획 변경 사유</td><td colspan="3"></td></tr>
<tr><td>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정책개발비</td><td>총 액</td><td colspan="2">금 원(금 원)</td></tr>
<tr><td>용역목적</td><td colspan="2"></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2"></td></tr>
<tr><td>특기사항</td><td colspan="3"></td></tr>
</table>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정책 연구 용역	용역목적	
	집행내역	
	주요내용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용역 보고서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의회의장 귀하

홍천군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0년 10월 30일

홍천군 조례 제2702호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홍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홍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및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2.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4.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0년 10월 30일

홍천군 조례 제2703호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권면금액"을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명절의"를 "명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 600만 원"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품권 출시 기념, 설·추석 명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 원 범위에서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액을 조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② (생 략)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② (생 략)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 출시 기념, 설・추석 명절의 경우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③ ---------- 명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 ---------- 월 50만원------ ------- 다만, 상품권 출시 기념, 설・추석 명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 원 범위에서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액을 조정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홍천군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0년 10월 30일

홍천군 조례 제2704호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점용료 등 감면기준

[제3조 관련]

감 면 기 준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 %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 %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0 %
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 %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용의 경우	100 %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 %
8.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100 %
9.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100 %
나.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50 %
다.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30 %
라. 재해로 인하여 점용물 등의 유실 또는 손실로 인하여 당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점용의 잔여 기간분	100 %
10.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비율

홍천군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0년 10월 30일

홍천군 조례 제2705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내 대학"이란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학교를 말한다.(제5호의 대학 및 제5호와 유사한 학교는 제외한다)
2. 한국농수산대학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학을 말한다.

제3조(명칭) 본 장학회 명칭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장 기금 조성·관리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향토인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 무궁화 장학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총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1. 홍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이 지원하는 출연금은 회계연도마다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홍천군 금고 및「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위원장은 장학회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업무 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다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 홍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및 심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재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두는 임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며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3. 위원: 25명 이내
4. 감사: 2명

② 장학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의장과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간사는 1명을 두며,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 임기) 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홍천군의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장학회 운영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장학회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개최 시기는 3월로 한다.
②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서면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장학사업

제15조(장학사업) 장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2. 입학금,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
3. 학사(學舍) 등 시설의 설치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지원

제16조(장학생 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그 밖에 장학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제17조(장학생 신청자격) ① 장학생 신청자는 선발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5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학력우수 장학금, 예·체·기능 특기 장학금, 고시합격 장학금,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③ 장학생 신청자격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서면, 북방면, 내면 일부 지역의 학생이 학군으로 인하여 관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내 고등학교에서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학교별 특색 및 다양한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생
가. 신입생: 관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입학한 사람(재수생을 포함한다)
나. 재학생: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직전 1~2학기 성적(계절학기는 제외한다) 성적평균이 3.5/4.5 이상인 사람(복학생의 경우도 같다)
3. 예·체·기능 특기 장학생: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다만, 관내에 특수 목적 중학교가 없으므로 관외에서 특수 목적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관내·외 고등학교 및 국내 대학교에 입학·재학중인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의 도단위 공인대회 1위 입상 또는 전국단위 이상 공인대회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

4. 고시합격 장학생: 재학 중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국가고시는 현행 행정・기술분야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로 한정한다.)
5. 특별장학생(대학신입생) : 제13조제3항제1호의 대상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국어, 영어, 수학 영역 중 2개 과목 등급의 합이 4 이내이고, 탐구영역(한국사 포함) 중 2개 과목 등급의 합이 4 이내인 사람

제18조(추천) 고등학교 재학생(신입생을 포함한다)을 장학생으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이 공고한 기일 내에 해당 학교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 및 선발기준) 장학생은 해당 연도 운용기금 범위에서 선발하되, 추천자 중 위원회에서 선발하며, 심의 및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20조 각 호에 따라 신청하거나 추천된 사람 중 성적을 우선으로 하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는 상위 규모 대회 입상 및 최근 경기성적 우수자를 우선 선발한다.
2. 성적 및 입상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장학금 지급 및 시기)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 지급액과 지급대상은 해당 연도의 출연금과 예금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장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한다.

1. 고등학생: 총 100만원(학기당 50만원)
2. 대학생(신입생): 총 100만원(학기당 50만원)
3. 대학생(재학생): 총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4. 고시 합격생: 총 300만원
5. 특별장학생(대학신입생) : 총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제21조(장학금 지급의 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은 때
2. 휴학하였을 때
3.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4. 1학기 성적이 장학생 신청자격에 미달하였을 때
5. 해당 학기에 졸업을 하였을 때(졸업 유예 포함)

제5장 보칙

제22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록유지) 간사는 장학회 운영에 모든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생 신 청 서

1. 장학생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 별	(남 . 여)
학 교 명	학교 학년		학과(재학·졸업)
출신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의 종류			
성적(성취도합산평균점,평균학점,경기입상)			
보호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2. 가족사항

관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3. 보호자 재산상황

주 택	자택(단독.아파트) . 전세 . 월세 . 기타			
재산현황	부 동 산	동 산	월평균소득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상기 본인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장학생으로 지원합니다.

첨부 1.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2. 합격통지서 사본(입학생, 고시) 도는 재학증명서(재학생) 1부
3. 최종학기 성적증명서 1부
4.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입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무궁화장학회운영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홍천무궁화장학회 장학생 추천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 주 소			
학 교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위 학생은 학력성적 및 품행이 양호한 향토인재로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 ○ ○ 장 (직 인)

홍천군무궁화장학회운영위원장 귀하

홍천군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0년 10월 30일

홍천군 조례 제2706호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홍천군 농업인(이하 "농업인" 이라 한다)이 영농행위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농약용기, 부직포, 점적테이프(필름류), 모종판, 하우스 차광망,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외 각종 비닐 등 수거·처리가 필요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홍천군 지역 농경지에서 수집·배출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제4조(책무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영농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처리 등을 위하여 농촌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
2.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방법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 등을 위하여 농촌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으며, 추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폐기물 집하장 지정 또는 설치

2. 영농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에 필요한 수거, 운반비용 및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기관·단체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감독 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0년 10월 30일

홍천군 조례 제2707호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사무소의 명칭	소 재 지
홍 천 군 청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홍천읍 홍천로 351
화촌면 행정복지센터	화촌면 성산로 143
두촌면 행정복지센터	두촌면 자은로 349
내촌면 행정복지센터	내촌면 내촌길 27
서석면 행정복지센터	서석면 풍암길 10
동면 행정복지센터	동면 공작산로 497
남면 행정복지센터	남면 양덕원로 97
서면 행정복지센터	서면 팔봉산로 617
북방면 행정복지센터	북방면 영서로 2698
내면 행정복지센터	내면 창촌로 5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사무소의 명칭	소 재 지
홍 천 군 청	홍천읍 희망리 181번지
홍천읍사무소	홍천읍 신장대리 66-1번지
화촌면사무소	화촌면 성산리 461-1번지
두촌면사무소	두촌면 자은리 869-2번지
내촌면사무소	내촌면 도관리 440번지
서석면사무소	서석면 풍암리 489-8번지
동면사무소	동 면 속초리 873-1번지
남면사무소	남 면 양덕원리 178-1번지
서면사무소	서 면 반곡리 147-4번지
북방면사무소	북방면 상화계리90-3번지
내면사무소	내 면 창촌리 1573-7번지

별표

사무소의 명칭	소 재 지
홍천군청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홍천읍 홍천로 351
화촌면 행정복지센터	화촌면 성산로 143
두촌면 행정복지센터	두촌면 자은로 349
내촌면 행정복지센터	내촌면 내촌길 27
서석면 행정복지센터	서석면 풍암길 10
동면 행정복지센터	동면 공작산로 497
남면 행정복지센터	남면 양덕원로 97
서면 행정복지센터	서면 팔봉산로 617
북방면 행정복지센터	북방면 영서로 2698
내면 행정복지센터	내면 창촌로 59

홍천군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0년 10월 30일

홍천군 조례 제2708호

홍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통계”란「통계법」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3.“데이터기반행정”이란 홍천군(이하“군”이라고 한다)과 제3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 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을 포함한다)과「홍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 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 업무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구성·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제공·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3.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수집·활용·분석 시스템
2.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 제공시스템

제11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제10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수집·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소통 등) ① 군수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 등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군민과의 소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집·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요 추진 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데이터기반행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데이터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제14조(통계의 개발) ① 군수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발·작성·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계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통계의 개발과 연속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경제·관광·의료·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을 지키도록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0년 10월 30일

홍천군 조례 제2709호

홍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홍천군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홍천군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홍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 시설물 관리·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④ 군수는 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

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홍천군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 공무원
2.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5.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 군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마트도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0년 10월 30일

홍천군 조례 제2710호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홍천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단체에 가입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장 홍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제3조(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 등의 상생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군 체육진흥업무 담당과장, 군 체육회장
2. 위촉직 :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업무 담당을 간사로, 체육진흥업무 담당 주무관을 서기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장 체육의 진흥 및 지원

제11조(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을 보호・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 연령, 장애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5.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조사·연구·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7. 장애인체육 관련 조사·연구·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장애인체육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체육단체 등 지원

제16조(체육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제3장에서 정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홍천군체육회 및 홍천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 운영 기본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③ 제2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홍천군체육회 및 홍천군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 또는 각종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체육단체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체육단체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단체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인건비·운영비 또는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의 적정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 설치 시에 시설을 이용할 주민의 성별·연령·장애 유무 등에 따른 특성이나 요구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시설 이용 지원) ① 군수는 주민들이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2.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동호인 조직
3. 학교 운동경기부 및 스포츠클럽

제21조(학교체육시설 지원) ①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관
2. 운동장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체육시설

제6장 보 칙

제2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장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위탁의 철회) 군수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사업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공유재산의 지원) 군수는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내용 및 조건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위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이나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에게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관리계획) 군수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등에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홍천군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0년 10월 30일

홍천군 조례 제2711호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써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기념비·동상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는 홍천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 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홍천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기념비, 동상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5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3. 주변 장애물 현황
4. 동상, 기념비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성, 상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안전성
3.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6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조성・제작 또는 건립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3.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4. 「홍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군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6.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국장, 주관부서 담당과장, 관리부서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홍천군 경관위원회 소속 위원

나.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 지역주민 등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군수는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으며,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제11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0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제12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비치(별지 제4호 서식)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
3.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②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예산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조형물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및 안내판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한 공공조형물은 제7조에 따른 홍천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자</td><td colspan="2">성명(단체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2"></td><td>대상자와 관 계</td><td></td></tr>
<tr><td rowspan="5">건립대상</td><td rowspan="3">인 물</td><td>성 명 (한 자)</td><td></td><td>(남 ,여)</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사망일시 (발생일시)</td><td></td></tr>
<tr><td>주요업적 개 요</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기 타 조형물</td><td>명 칭</td><td colspan="4"></td></tr>
<tr><td>건립위치</td><td colspan="4"></td></tr>
<tr><td>규 모</td><td colspan="4"></td></tr>
</table>

「홍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홍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나. 모형 또는 형태:
   다. 재 질: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

1. 사업의 필요성:

2. 대상지 적정성(동상의 경우 대상지 현황 분석):

3. 주민의견:

4. 파급효과:

5. 주관부서 검토의견: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품명칭		건립일자	
건립위치 (공공시설명)		사 업 비 (제작비)	
구조 및 규격		형 상 (재 질)	
건립주체	(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	작가현황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관리기관 (구군/부서명)		생애주기 (존치기한)	
관리방법	(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		
건립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뒤쪽)

공공조형물 위치(배치)도
공공조형물 전면사진

210mm×297mm(일반용지 80g/㎡)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0-1846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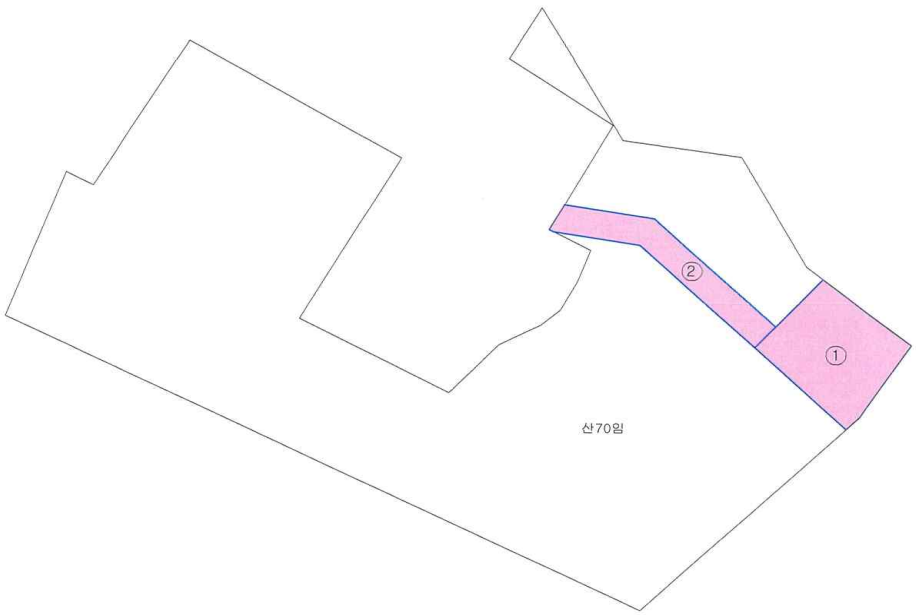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두미리 산70
3. 도로길이 : 49.0m
4. 도로너비 : 6.0m
5. 도로면적 : 30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두미리	산70	임	9,929	300	배윤덕	

실 측 도

소 재 지	홍천군 서면 두미리 산70번지	축 척	1 : 1,200
측량일자	2020년 9월 일	제 출 인	(주)제일측량토목설계사무소



(단위 : M^2)

동 리 명	기 호	지 번	지 목	지 적	신청면적	비 고
두 미 리	①	산70	임	9,929.0	495.0	
	②				300.0	
	계			9,929.0	795.0	

홍천군 공고 제2020-1953호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운행제한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을 제작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홍 천 군 수

1. 제목 :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운행제한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 제공일자 : 2020. 10. 26.(월)
3. 제공받는 자 : 홍천갈마곡우편취급국(주식회사 포트트피아)
4. 제공목적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조치 관련 안내문 인쇄
5.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6.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성명, 주소, 차량등록번호
7.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안내문 인쇄 완료시까지
8. 공고기간 : 2020. 10. 26. ~ 11. 9.(15일간)
9.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기타

홍천군 공고 제2020-1958호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보금자리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0. 10. 23. ~ 11. 12. (20일)

3. 개정이유

홍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무료임대주택을 통합.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의 주거복지에 힘쓰고자 전부 개정함

4. 주요내용

가.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로 조례명 변경

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상주택에서 가정위탁아동, 저소득층아동, 한부모가족 아동을 입주대상에 추가(안 제3조)

다. 임대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 연장계약 할 수 있으나, 아동주택에 대해서는 만18세까지 계속해서 연장계약이 가능(안 제5조)

라. 임대료는 무료로 하고, 세대별 전용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 공용사용료는 군에서 부담하나, 아동주택의 공용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안 제9조)

마.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에 아동주택 추가(별표 1)

바. 선정기준 배점표에 아동대상자 배점표 추가(별표 2)

사.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입주신청서에 아동주택신청구분 추가(별지 제1호 서식)

아.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입주계약서에 아동주택은 만18세까지 연장계약 가능문구 추가(별지 제2호 서식)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 토지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 연락처: 전화 033)430-2197 팩스 033)430-2159

라. 의견제출 방법: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홍천군 조례 호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보금자리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대상)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
2.「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에 위탁된 아동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가정 아동
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입주 신청 등) ①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입주신청자의 주거실태와 소득, 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입주신청자를 심사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계약기간) ① 주택입주 계약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입주자는 만18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연장계약 만료 시 다른 수급자와 동등하게 입주 신청을 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입주자 선정에 따른다. 단, 제7조에 따라 입주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을 계약 만료일로 간주한다.

③ 입주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입주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서약서 및 입주자 공동수칙 준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사용
2. 주택의 전대(轉貸) 또는 임대
3. 임의의 주택 구조 변경

③ 서약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④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입주자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입주민이 스스로 숙식해결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4. 입주자가 3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때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관리) ① 주택은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담당부서가 관리하며,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년 1회 이상 시설물 및 입주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관리비 및 임대료) ① 입주자가 사용하는 전용사용료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공용사용료 등은 군에서 부담한다. 단, 별표 1의 주택 중 아동주택의 공용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은 제외)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주택의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위치(조례 제2조 관련)

행정구역	소 재 지	비 고
홍천읍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77-35	3가구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77-37	6가구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77-39	6가구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77-41	1가구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77-43	1가구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77-45	1가구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77-47	1가구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77-49	1가구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77-51	1가구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110, 101동 1112호 (신아1차아파트)	2가구 (아동주택)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110, 101동 1411호 (신아1차아파트)	
두촌면	홍천군 두촌면 가래들길 10-1	2가구
남면	홍천군 남면 시동안로 219-3	2가구
북방면	홍천군 북방면 두개비산로 197-21	10가구

[별표 2]

선정기준 배점표(조례 제4조 관련)

가. 일반대상자

구 분		배 점	비 고
총 계 (만점)		100점	
가구형태 및 연령 (50)	○ 70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 장애아동 동거 가구 ○ 한부모가족 자녀 초등학생 이하 가구	50점	
	○ 70세 이상 부부 ○ 한부모가족 자녀 중학생 이하 가구 ○ 장애인 동거 가구	48점	
	○ 65 ~ 69세의 독거노인 가구 ○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생 이하 가구	46점	
	○ 65 ~ 69세의 부부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생 이하 가구	44점	
	○ 그 밖의 가구	42점	
홍천군 거주기간 (20)	○ 5년 이상	20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
	○ 3년 ~ 4년	19점	
	○ 1년 ~ 2년	18점	
	○ 1년 미만	17점	
가구원수 (20)	○ 4인 가족 또는, 독거노인	20점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 3인 가족	19점	
	○ 2인 가족	18점	
	○ 1인 가족	17점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10)	○ 입주 시급성 등 (상)	10점	입주 시급성 등 종합판단
	○ 입주 시급성 등 (중)	8점	
	○ 입주 시급성 등 (하)	6점	

선정기준 배점표(조례 제4조 관련)

나. 아동대상자

구 분		배 점	비고
총 계 (만점)		100점	
부양 아동연령 (30)	5세 이하	30점	
	10세 이하	25점	
	15세 이하	20점	
	18세 이하	15점	
가구원수 (30)	3인 이상	30점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2인	25점	
	1인	20점	
홍천군 거주기간 (30)	5년 이상	30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
	3년 ~ 4년	25점	
	1년 ~ 2년	20점	
	1년 미만	15점	
자치단체장 종합판단 (10)	입주 시급성 등 (상)	10점	입주 시급성 등 종합판단
	입주 시급성 등 (중)	8점	
	입주 시급성 등 (하)	6점	

[별지 제1호 서식]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입주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
(성별)</td><td>(　　)</td><td>연령</td><td>만　　세</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033)
H・P</td></tr>
<tr><td colspan="2">가구원수</td><td>명</td><td colspan="2">홍천군에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td><td colspan="2">년</td></tr>
<tr><td colspan="2">주거형태</td><td colspan="5">전세(　), 월세(　), 무료임차(　), 기타(　　)</td></tr>
<tr><td colspan="2">보장구분</td><td colspan="5">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2. 가정위탁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아동(　),
법정 한부모가족아동(　)
3. 기타(　　)</td></tr>
<tr><td colspan="2">읍.면장 추천의견
(생활여건 등)</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입주계약서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관리 주체인 "홍천군수"(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입주자로 선정된 "○○○"(이하 「을」이라 칭한다)과의 사이에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물건의 표시>

강원도 홍천군

제1조【인도일】계약 주택의 인도는 20 년 월 일자로 하며 「갑」은 계약 시의 상태로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계약 주택의 계약기간은 「을」이 입주 후「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5년(20 . . ~ 20 . .)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아동주택은 만18세까지는 계속해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연장기간 만료 시에는 다시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주취소 되거나,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에 따라 퇴거조치 되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퇴거할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3조【계약해지의 통보】본 계약의 성립 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즉시 「갑」과 「을」은 모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퇴거】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을」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결정일 1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개조 및 수리의 금지】「을」은 「갑」의 승낙 없이 계약 주택과 그 부지 위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구조 변경과 대수리를 할 수 없다. 또한 「갑」의 승낙을 얻어 상기 행위를 하였을 때도 해당 개조.수리 등을 한 것을 뜯거나 본 건 계약 주택 명도 시에 「갑」에게 금전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6조【원상회복 의무】「을」이 「갑」의 승낙 없이 계약 주택을 개조 및 수리 등을 하거나 「을」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계약 주택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였을 때는 그 복구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화재 등으로 인한 주택의 멸실】「을」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계약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을 때는 「을」은 「갑」과 계약 시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

제8조【공과금 등의 부담】 전기, 가스, 수도, 아파트관리비 등의 각종 공공 서비스의 이용료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주택의 사용 용도】「을」은 계약 주택을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이주비 등의 청구 금지】「을」은 계약 주택의 명도 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주비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계약 이외의 사항】본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관습과 적용 법률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 천 군 수 (인)

<을>

강원도 홍천군 읍·면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로서 다음 사항을 지키겠습니다.

1.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지 않는다.
2. 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상습적인 고성방가, 이웃 간 분쟁 및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공용부분을 개인적 사용 또는 적치물을 두지 않는다.
5. 애완동물 사육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6.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한다.
7. 퇴소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린다.
8.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위 사항을 어길 시 입주계약이 해지되며, 즉시 강제 퇴거됩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명 날인하여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홍 천 군 수 귀하

관 계 법 령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여성가족부령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홍천군 공고 제2020-1959호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예고기간 : 2020. 10. 23. ~ 11. 20. (20일)
3. 제안이유

홍천군 행복주택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별도의 특별회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사용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3조)
라. 세입과 세출내역을 정함(안 제4조~5조)
마.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함(안 제6조)
바. 예산의 이월 및 일반회계로의 전.출입(안 제7조~8조)
사. 다른 법령의 적용을 정함(안 제9조)
아. 존속기한(안 제10조)
자. 시행규칙을 정함(안 제11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 토지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 연락처: 전화 033)430-2197 팩스 033)430-2159
라. 의견제출 방법: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홍천군 조례 호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행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행복주택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에 따른 행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홍천군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행복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4. 예비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다.

제7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그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전·출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

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홍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시행하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홍천군 공고 제2020-1966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홍 천 군 수

□ 공 고 명: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 공고기간: 2020. 10. 26. ~ 11. 9.(15일간)
□ 공고내역: 붙임 참조
□ 문 의: 홍천군 도시교통과 도시관리담당(033-430-2937)

붙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공고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4.29>

공고 제2020-1966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홍천군수 인

(단위: ㎞, 억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 종류	사업 시행청	도로구간		도로 총길이	전체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래계획	
			기점	종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홍천강변-1	전용→겸용	홍천군	연봉리 330	연봉리 4-59	1.64	1.64	0.07	1.64	0.07										
홍천강변-2	전용→겸용	홍천군	연봉리 3-4	갈마곡리 286-26	1.36	1.36	0.05												
홍천강변-3	전용→겸용	홍천군	대학리 52-2	희망리 421-3	2.94	2.94	0.88	2.94	0.88	2.94	0.88								
송학강변로-4 (소로1류 34)	전용 차로	홍천군	연봉리 402-66	연봉리 306-8	0.73	0.73	0.62						0.73	0.62					
꽃뫼로-1 (중로1류 3)	전용→겸용	홍천군	희망리 345-63	하화계리 17-7	0.50	0.50	0.01	0.50	0.01										
꽃뫼로-2 (중로1류 3)	겸용	홍천군	하화계리 산 9-1	희망리 345-63	0.30	0.30	0.02	0.30	0.02										
무궁화로-1 (대로3류 1)	전용→겸용	홍천군	희망리 387-16	연봉리 467	0.20	0.20	0.01	0.20	0.01										
무궁화로-3 (대로3류 1)	겸용	홍천군	연봉리 290-4	연봉리 260-3	0.67	0.67	0.02	0.67	0.02										
홍천강진입로 (대로3류 6)	겸용	홍천군	희망리 392-2	희망리 399-1	0.25	0.25	0.14							0.25	0.14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 종류	사업 시행청	도로구간		도로 총길이	전체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래계획	
			기점	종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홍천로-1 (중로1류 1)	겸용	홍천군	하화계리 290-6	희망리 401-4	0.98	0.98	0.07	0.98	0.07										
홍천로-2 (대로3류 1)	겸용	홍천군	희망리 362-4	갈마곡리 270-41	2.15	2.15	0.34			2.15	0.34								
홍천로-3 (대로3류 1)	겸용	홍천군	갈마곡리 산49-6	태학리 50	0.36	0.36	0.03	0.36	0.03										
홍천로-4 (중로1류 1)	겸용	홍천군	하화계리 300-16	상화계리 329-9	1.76	1.76	0.12	1.76	0.12										
송학강변로-2 (소로1류 34)	겸용	홍천군	연봉리 402-64	연봉리 306-8	1.03	1.03	0.07	1.03	0.07										
남산강변로 (중로2류 8)	겸용	홍천군	연봉리 467	연봉리 1-1	0.97	0.97	0.71									0.97	0.71		
설악로-1 (대로3류 8)	겸용	홍천군	연봉리 1-1	갈마곡리 151-2	0.89	0.89	0.98									0.89	0.98		
소육개로-1 (중로2류 29)	겸용	홍천군	갈마곡리 507-5	갈마곡리 29-91	1.57	1.57	0.11	1.57	0.11										
공작산로-1 (대로3류 4)	겸용	홍천군	갈마곡리 535-5	갈마곡리 195-1	0.55	0.55	0.08	0.55	0.08										
석화로-1 (중로1류 4)	겸용	홍천군	희망리 323-5	희망리 302-1	0.24	0.24	0.05	0.24	0.05										
너브내길-2 (소로3류 25)	겸용	홍천군	희망리 387-23	갈마곡리 265	1.78	1.78	0.32							1.78	0.32				
학명루길 (중로2류 4)	겸용→전용	홍천군	신장대리 25	연봉리 1-1	0.25	0.25	1.20			0.25	1.20								
마지기로 142번길 (소로1류 62)	겸용→ 폐지	홍천군	희망리 243-9	희망리 산5-4	0.30	0.30	0.00	0.30	0.00										
두개비산로-1 (소로1류 18)	겸용→ 우선	홍천군	희망리 산37-5	희망리 산43-3	0.46	0.46	0.07	0.46	0.07										
	겸용→ 폐지	홍천군	희망리 산43-3	중화계리 16-1	1.26	1.26	-	1.26	-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 종류	사업 시행청	도로구간		도로 총길이	전체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래계획	
			기점	종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두개비산로-2 (중로3류 4)	겸용→우선	홍천군	화동리 산 77-4	중화계리 160-1	0.32	0.32	-	0.32	-										
	겸용→폐지	홍천군	상화계리 107-1	화동리 산 77-4	1.01	1.01	0.16	1.01	0.16										
아루정길~수타사간-1	겸용→우선	홍천군	검율리 273-30	덕치리 329-3	2.30	2.30	0.18	2.30	0.18										
홍천로-5 (대로3류 1)	겸용	홍천군	대학리 49-17	결운리 326-4	1.27	1.27	4.54					1.27	4.54						
갈마로-1 (중로1류 12)	겸용	홍천군	갈마곡리 226	갈마곡리 170-1	0.23	0.23	0.03	0.23	0.03										
갈마로-2 (중로1류 12)	겸용	홍천군	갈마곡리 68-1	갈마곡리 207-10	0.55	0.55	0.08	0.55	0.08										
갈마로 11길 (중로1류 12)	겸용	홍천군	갈마곡리 23-73	갈마곡리 68-1	0.45	0.45	0.06	0.45	0.06										
주공6진입로 (소로1류 39)	전용→폐지	홍천군	갈마곡리 222-2	갈마곡리 222-2	0.16	0.16	0.01	0.16	0.01										
소옥개로-2 (중로2류 29)	겸용	홍천군	갈마곡리 23-15	검율리 268-2	0.75	0.75	0.05	0.75	0.05										
결운로-2 (중로2류 12)	겸용→폐지	홍천군	검율리 270-5	결운리 306-4	0.42	0.42	0.03	0.42	0.03										
석화로-2 (중로2류 8)	겸용	홍천군	갈마곡리 432-16	희망리 89-1	1.50	1.50	0.03	1.50	0.03										
진리로 (중로2류 45)	겸용→폐지	홍천군	희망리 149-14	희망리 98-7	0.22	0.22	0.02	0.22	0.02										
연봉 중앙로 (중로2류 41)	겸용	홍천군	연봉리 493	연봉리 493	0.22	0.22	0.02	0.22	0.02										
영서로 (국도 5호선)	겸용	홍천군	능평리 72-2	홍천군계	4.10	4.10	14.88											4.10	14.88
굴지강변로 (리도211)	우선	홍천군	굴지리 110-1	홍천군계	3.40	3.40	0.27											3.40	0.27
팔봉산로 (국지도 70호선)	겸용	홍천군	팔봉산관광지	홍천군계	1.70	1.70	6.17											1.70	6.17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 종류	사업 시행청	도로구간		도로 총길이	전체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래계획	
			기점	종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한서로(국지도 70호선)	겸용	홍천군	반곡리 260-4	홍천군계	10.80	10.80	39.20											10.80	39.20
홍천강변	겸용	홍천군	반곡리 260-4	홍천군계	21.00	21.00	41.58											21.00	41.58
공작산로, 금계로 (지방도 444호선)	겸용	홍천군	황산벌가든	부곡IC 교차로	20.00	20.00	72.60											20.00	72.60
덕치길 (리도213)	겸용	홍천군	덕치교 동단	새터교 서단	0.62	0.62	0.08	0.62	0.08										
소구니길	우선	홍천군	덕치잠수2교	덕치교 동단	0.53	0.53	0.04	0.53	0.04										
수타사로 (리도 202,213)	우선	홍천군	새터교 서단	귀미뜰교	1.39	1.39	0.11	1.39	0.11										
	우선	홍천군	귀미뜰교	수타지구	0.74	0.74	0.06	0.74	0.06										
	우선	홍천군	덕치리 52-13	수타사 입구	0.42	0.42	0.03			0.42	0.03								
수타지구내 내부도로	우선	홍천군	덕치리 80-9	덕치리 52-13	0.57	0.57	0.05			0.57	0.05								
샘재길 (리도204)	우선	홍천군	새마을교	가리산 교차로	3.80	3.8	0.30					3.8	0.3						
가리산로 (리도205)	우선	홍천군	가리산 교차로	가리산 자연휴양림	4.19	4.19	0.34					4.19	0.34						
홍천로 (군도16)	겸용	홍천군	검율리 270-5	걸운리 306-4	5.08	5.08	18.44	5.08	18.44										
제방도로1R	우선	홍천군	연봉리 467	연봉리 1-1	1.24	1.24	20.94			1.24	20.94								
제방도로2R	우선	홍천군	연봉리 1-1	갈마곡리 151-2	1.02	1.02	0.11			1.02	0.11								
제방도로1L	우선	홍천군	갈마곡리 507-5	갈마곡리 23-91	3.29	3.29	4.20					3.29	4.20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 종류	사업 시행청	도로구간		도로 총길이	전체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래계획	
			기점	종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제방도로2L	우선	홍천군	갈마곡리 23-15	검율리 268-2	1.08	1.08	0.12					1.08	0.12						
홍천강변1L	겸용	홍천군	갈마곡리 535-5	갈마곡리 195-1	1.24	1.24	2.46					1.24	2.46						
주음치로	우선	홍천군	희망리 323-5	희망리 302-1	1.02	1.02	0.11					1.02	0.11						
홍천강변2L	겸용	홍천군	갈마곡리 432-16	희망리 89-1	1.08	1.08	2.14					1.08	2.14						
북창길 (리도202)	우선	홍천군	희망리 387-23	갈마곡리 265	1.81	1.81	0.29					1.81	0.29						
철정길 (리도202)	우선	홍천군	신장대리 25	연봉리 1-1	2.38	2.38	0.38					2.38	0.38						
가래들길 (리도204)	우선	홍천군	갈마곡리 226	갈마곡리 170-1	2.23	2.23	0.36					2.23	0.36						
도사곡길-2 (군도14)	우선	홍천군	도사곡길 -2	갈마곡리 68-1	0.98	0.98	0.16							0.98	0.16				
도사곡길-3 (군도14)	우선	홍천군	소매곡리 309-2	도사곡리 산6-4	0.74	0.74	0.12							0.74	0.12				
문들길 (군도14)	우선	홍천군	도사곡리 산6-4	굴지 제2교	1.11	1.11	0.18							1.11	0.18				
굴지강변로 (군도14)	우선	홍천군	굴지 제2교	남노일 대교	6.30	6.30	1.01							6.30	1.01				
고드래미길	겸용	홍천군	남노일 대교	고주암교	2.28	2.28	9.03							2.28	9.03				
남노일길 (군도14)	우선	홍천군	고주암교	위안터교	1.10	1.10	0.18							1.10	0.18				
노일로 (군도14)	우선	홍천군	위안터교	북노일교	4.59	4.59	0.73									4.59	0.73		
도룡골길 (군도14)	우선	홍천군	북노일교	팔봉잠수 2교	1.07	1.07	0.09									1.07	0.09		
홍천강변	겸용	홍천군	팔봉잠수 2교	한치골길	2.09	2.09	17.71									2.09	17.71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 종류	사업 시행청	도로구간		도로 총길이	전체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래계획	
			기점	종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한치골길 (면도101)	겸용	홍천군	팔봉리 987	팔봉관광지	1.03	1.03	0.07									1.03	0.07		
팔봉산로 (군도9)	겸용	홍천군	상수리 319-3	팔봉관광지	4.00	4.00	14.52											4.00	14.52
홍천로-5 (중로1류 3)	겸용	홍천군	대학리 59-3	갈마곡리 산47-5	1.70	1.70	0.12			1.70	0.12								
갈마로-3 (중로1류 15)	겸용	홍천군	갈마곡리 5-10	갈마곡리 67-7	0.40	0.40	0.06					0.40	0.06						
갈마로 7길 (중로2류 27)	겸용	홍천군	갈마곡리 266-100	갈마곡리 242-5	0.33	0.33	0.05			0.33	0.05								
걸운로-4 (중로2류 12)	겸용	홍천군	검율리 268-3	갈마곡리 508-18	0.75	0.75	0.05							0.75	0.05				
걸운로-5 (중로2류 12)	겸용	홍천군	검율리 252-1	갈마곡리 71-2	0.42	0.42	0.03					0.42	0.03						
연봉 중앙로 (중로2류 41)	겸용	홍천군	연봉리 493	연봉리 493-2	0.58	0.58	0.06					0.58	0.06						
	우선	홍천군	연봉리 86-21	연봉리 493-21	0.69	0.69	0.11							0.69	0.11				
연봉로-1 (중로1류 6)	겸용	홍천군	연봉리 402-38	연봉리 493-2	0.25	0.25	0.04									0.25	0.04		
꽃뫼로 (중로1류 3)	겸용	홍천군	희망리 124-6	신장대리 7-4	0.85	0.85	0.12									0.85	0.12		
희망로 (중로1류 5, 중로 2류 14)	겸용	홍천군	희망리 124-6	진리 107-56	0.82	0.82	0.07									0.82	0.07		
마지기로-2 (중로2류 6, 44)	전용	홍천군	희망리 86-21	진리 107-56	0.67	0.67	3.20							0.67	3.20				
연봉로-2 (중로3류 4, 중로 2류 13)	우선	홍천군	연봉리 402-38	연봉리 493-2	0.24	0.24	0.04			0.24	0.04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 종류	사업 시행청	도로구간		도로 총길이	전체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래계획	
			기점	종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마지기로-3 (중로2류 12, 중로 3류 4)	우선	홍천군	희망리 237-2	희망리 86-21	0.67	0.67	0.11							0.67	0.11				
석화로-3 (중로2류 8)	우선	홍천군	희망 교차로	희망리 86-21	0.36	0.36	0.06					0.36	0.06						
홍천로-4 (중로1류 1)	겸용	홍천군	화계삼거리	하화계리 290-5	3.39	3.39	0.24							3.39	0.24				
영서로 (국도5호선)	겸용	홍천군	화계삼거리	능평리 75-1	0.98	0.98	1.19							0.98	1.19				
하화계길 (리도304)	우선	홍천군	하화계리 338-4	화계교차로	1.42	1.42	0.23							1.42	0.23				
성동천 제방도로	우선	홍천군	화계1교 북단	공설운동장	0.73	0.73	0.08							0.73	0.08				
성산로 (군도16)	우선	홍천군	성산리 914	성산리 733-7	1.51	1.51	0.24					1.51	0.24	3.39	0.24				
산초율로-1	우선	홍천군	성산리 1035-1	성산교	1.88	1.88	0.21					1.88	0.21	0.98	1.19				
산초율로-2	우선	홍천군	성산삼거리	외삼포삼거리	0.83	0.83	0.07					0.83	0.07	1.42	0.23				
삼포2길 (리도204)	우선	홍천군	외삼포리 507-6	성산리 741-10	1.18	1.18	0.19					1.18	0.19	0.73	0.08				
구룡령로 (국도56호선)	겸용	홍천군	외삼포삼거리	외삼포리 507-6	1.61	1.61	2.08											1.61	2.08
자은로-1 (리도213)	겸용	홍천군	두촌초교	자은리 808-1	0.54	0.54	0.08					0.54	0.08						
자은로-2 (리도213)	우선	홍천군	자은로 379	자은교차로	0.20	0.20	0.03					0.20	0.03						
중골길 (리도207,213)	우선	홍천군	자은교차로	새마을교 북단	1.72	1.72	0.19					1.72	0.19	3.39	0.24				
자은로-3 (리도213)	우선	홍천군	새마을교 북단	자은로 1047	0.25	0.25	0.03					0.25	0.03	0.98	1.19				
샘재길	우선	홍천군	자은리 877-2	새마을교 북단	0.19	0.19	0.02					0.19	0.02	1.42	0.23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 종류	사업 시행청	도로구간		도로 총길이	전체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래계획	
			기점	종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아홉사리로 (지방도 451호선)	겸용	홍천군	도관리 523-5	도관교	0.46	0.46	1.10											0.46	1.10
내촌길 (리도205)	우선	홍천군	도관리 773-5	도관교	0.33	0.33	0.05							0.33	0.05				
도관길-1 (리도214)	우선	홍천군	도관교	도관리 484-1	0.75	0.75	0.12							0.75	0.12				
도관길-2	우선	홍천군	하나로 마트	도관리 484-1	0.17	0.17	0.03							0.17	0.03				
제방도로	우선	홍천군	둔덕말교	도관교	0.20	0.20	0.02							0.20	0.02				
내촌 큰골길	우선	홍천군	둔덕말교	내촌면사무소	0.63	0.63	0.05							0.63	0.05				
구룡령로-1 (국도56호선)	겸용	홍천군	풍암리 491-4	풍암리 117-1	0.82	0.82	0.43			0.82	0.43								
풍암길 (중로3류)	우선	홍천군	서석더미널	서석성당	0.60	0.60	0.10			0.60	0.10								
구룡령로-2 (소로2류)	우선	홍천군	풍암리 231-10	서석면사무소	0.14	0.14	0.02			0.14	0.02								
풍암장터1길 (중로3류)	우선	홍천군	풍암리 989	풍암리 285	0.94	0.94	0.15			0.94	0.15								
청정로 (중로3류)	우선	홍천군	풍암리 233-1	풍암리 254	0.12	0.12	0.02			0.12	0.02								
아미산로-1 (리도201)	우선	홍천군	풍암리 488-3	풍암리 759-16	1.23	1.23	0.20			1.23	0.20								
아미산로-2 (리도201)	우선	홍천군	풍암리 742-4	풍암리 1095-1	0.37	0.37	0.04			0.37	0.04								
장촌로 (리도209)	우선	홍천군	창촌리 1563-4	창촌1교	1.06	1.06	0.17									1.06	0.17		
구룡령로 (국도56호선)	겸용	홍천군	내면고교	대한교	1.63	1.63	5.92											1.63	5.92
대한동길	우선	홍천군	대한교	창촌2교	0.56	0.56	0.04									0.56	0.04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 종류	사업 시행청	도로구간		도로 총길이	전체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래계획	
			기점	종점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공작산로 (지방도 444호선)	겸용	홍천군	동면대교	속초리 683-4	1.01	1.01	3.67												
수타사로 (리도202)	우선	홍천군	동면농협	단봉교	1.46	1.46	0.23	1.46	0.23										
속초길 (리도202)	우선	홍천군	속초리 683-14	속초리 754-1	0.88	0.88	0.14	0.88	0.14										
오령로 (리도211)	우선	홍천군	동면대교	성수교	0.37	0.37	0.06	0.37	0.06										
삼수리천 제방도로	우선	홍천군	성수교	덕치교	1.33	1.33	0.15	1.33	0.15										
양덕원로-1 (리도218)	겸용	홍천군	명덕초교	남면생활 체육공원	0.90	0.90	1.63									0.90	1.63		
양덕원로-2 (군도7)	겸용	홍천군	명덕초교	양덕원교 북단	0.60	0.60	0.04									0.60	0.04		
남노일로 (군도7)	겸용	홍천군	명덕초교	명동교 남단	0.35	0.35	0.02									0.35	0.02		
명덕길-1	우선	홍천군	명동교 남단	양덕원리 351-7	0.79	0.79	0.06									0.79	0.06		
명덕길-2 (리도205)	우선	홍천군	양덕원교 북단	화전교	0.42	0.42	0.07									0.42	0.07		
어두원길 (리도222)	우선	홍천군	화전교	양덕원리 388	0.42	0.42	0.03									0.42	0.03		
화전천 제방도로	우선	홍천군	양덕원리 388	양덕원리 371	0.18	0.18	0.01									0.18	0.01		
양덕원천 제방도로	우선	홍천군	양덕원리 371	양덕원교	0.40	0.40	0.03									0.40	0.03		
팔봉산로 (국지도70호선)	겸용	홍천군	두미삼거리	산수리 319-3	1.80	1.80	6.53											1.80	6.53
감물악길	우선	홍천군	반곡초교	반곡교 남단	0.79	0.79	0.13									0.79	0.13		

※ 관련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 노선지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도시교통과 도시관리담당(033-430-2937)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공고 제2020-1967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홍 천 군 수

1.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 종류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 (폐지.변경) 사유
			기점	종점			포장 너비	포장 너비	
내면	농어촌 도로	212	내면 광원리 1182	내면 광원리 1204	1.86	광원리	6.5 (m)	6.5 (m)	도로확포장

2. 사업기간 : 2021. 6. ~ 2023. 6.
3. 사업시행자 : 홍천군수
4. 자금계획 : 2,900백만원
5.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홍천군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
7. 설계도서 : 생략(홍천군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에 비치)
8. 편입토지조서 : 별첨

내면광원리소사선(내면212호선)도로확포장공사편입토지조서

○ 토지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번호	동리명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527,384.0	37,056.9			
2	광원리	1165-2	도	512.0	32.9	국	홍*군	
3	광원리	1165-3	전	235.0	16.9	국	건*부	
4	광원리	1178-1	전	104.0	48.0	홍*표	강원도 홍천군 내면 ***로 ****	
5	광원리	1178-7	답	184.0	171.5	국	건*부	
6	광원리	1178-8	답	265.0	261.3	국	건*부	
7	광원리	1178-9	답	10.0	10.0	국	건*부	
8	광원리	1178-10	도	44.0	44.0	국	홍*군	
9	광원리	1178-11	답	149.0	92.2	국	건*부	
10	광원리	1178-6	도	9.0	9.0	국	홍*군	
11	광원리	1178-12	대	71.0	32.8	국	건*부	
12	광원리	1178-2	답	13.0	13.0	국	건*부	
13	광원리	1180-1	전	27.0	21.0	윤*복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 **-**	
14	광원리	1180-5	전	72.0	72.0	국	건*부	
15	광원리	1180-6	전	40.0	40.0	국	건*부	
16	광원리	1180-2	전	20.0	20.0	국	건*부	
17	광원리	1180-9	대	27.0	14.0	국	건*부	
18	광원리	1181-15	전	697.0	79.0	홍*표	강원도 홍천군 내면 ***로 ****	
19	광원리	1181-5	전	393.0	10.0	홍*표	강원도 홍천군 내면 ***로 ****	
20	광원리	1181-13	전	63.0	61.2	국	건*부	
21	광원리	1181-14	전	711.0	620.6	국	건*부	
22	광원리	1181-9	전	1,366.0	176.6	국	건*부	
23	광원리	1181-8	도	112.0	112.0	국	홍*군	
24	광원리	1181-12	도	223.0	168.1	국	건*부	

25	광원리	1181-18	도	198.0	145.9	국	건*부	
26	광원리	1181-19	전	82.0	72.4	국	건*부	
27	광원리	1181-4	전	6,756.0	622.0	조*현	강원도 홍천군 내면 ***로 ****	
28	광원리	1180-3	전	671.0	71.0	이*자	강원도 춘천시 **길**번길 ** (**동)	
29	광원리	1180-8	창	126.0	68.0	***리 영농회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 **-**	
30	광원리	1180-7	전	145.0	110.0	이*자	강원도 춘천시 **길**번길 ** (**동)	
32	광원리	1179	답	2,215.0	179.0	이*자	강원도 춘천시 **길**번길 ** (**동)	
33	광원리	1210	전	313.0	81.0	전*표	강원도 홍천군 내면 *** 길 **	
34	광원리	산69	임	63,273.0	56.0	전*표	강원도 홍천군 내면 *** 길 **	
34-1	광원리	산69	임	63,273.0	870.0	전*표	강원도 홍천군 내면 *** 길 **	
35	광원리	1179-1	구	4,654.0	690.1	국	건*부	
36	광원리	1182-1	도	2,454.0	260.2	국	농*****부	
37	광원리	1207-1	전	24,850.0	1,133.0	이*애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동 ***호 (**동, *******)	
37-1	광원리	1207-1	전	24,850.0	950.0	이*애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동 ***호 (**동, *******)	
39	광원리	1207-4	전	2,381.0	934.0	윤*복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 **-* (내면)	
40	광원리	1204	임	4,076.0	86.0	김*남 외 3인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 **-**	
41	광원리	산66	임	12,164.0	7.0	전*조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 **	
41-1	광원리	산66-2	임	380.0	230.0	전*조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 **	
42	광원리	1215-10	전	954.0	373.0	전*표	강원도 홍천군 내면 *** 길 **	
43	광원리	1215-2	대	560.0	158.0	재단법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로 *** (**로, ***빌딩)	
44	광원리	1220-1	도	930.0	223.5	국	농*****부	
45	광원리	1215-12	전	1,291.0	267.0	전*표	강원도 홍천군 내면 *** 길 **	
46	광원리	산56	임	1,091.0	208.0	전*조 외 1인	강원도 홍천군 내면 **리 *	
47	광원리	1219-3	전	15,362.0	1,036.0	신*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 ****-**, *동 ***호 (**동, *******)	
48	광원리	1906	천	86,082.0	3,543.8	국	건*부	
49	광원리	1237-6	대	660.0	19.0	구*영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 **	

49-1	광원리	1237-6	대	660.0	30.0	구*영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 **	
50	광원리	1237-9	대	300.0	1.0	이*순 외 1인	강원도 홍천군 내면 **리 ****	
51	광원리	1237-10	대	333.0	73.0	김*자 외 1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로*길 **, *동 ***호 (*동, **빌라)	
52	광원리	1237-11	대	432.0	154.0	김*자 외 1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로*길 **, *동 ***호 (*동, **빌라)	
53	광원리	1237-18	전	1,559.0	541.0	최*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로 ***, ***동 ***호 (**동, *******아파트)	
54	광원리	1237-15	전	71.0	71.0	김*화 외 2인	강원도 춘천시 **길 **, ***동 ***호 (**동, **아파트)	
55	광원리	1238-1	전	2,476.0	163.0	김*록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번길 **	
56	광원리	1301	전	6,096.0	36.0	전*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로***번길 ***, ***동 ****호 (**동, *********)	
56-1	광원리	1301	전	6,096.0	180.0	전*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로***번길 ***, ***동 ****호 (**동, *********)	
57	광원리	1301-1	전	287.0	287.0	전*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로***번길 ***, ***동 ****호 (**동, *********)	
58	광원리	1302-2	천	339.0	339.0	전*표	강원도 홍천군 내면 ***로 ****-*	
59	광원리	1302	전	1,810.0	592.0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로*길 **, ***동 ***호 (**동*가, ****)	
60	광원리	1302-1	도	480.0	18.1	국	농*****부	
61	광원리	1303-7	전	1,157.0	1,058.0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로*길 **, ***동 ***호 (**동*가, ****)	
62	광원리	1303-8	전	1,340.0	134.0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로*길 **, ***동 ***호 (**동*가, ****)	
62-1	광원리	1303-8	전	1,340.0	237.0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로*길 **, ***동 ***호 (**동*가, ****)	
63	광원리	1303-2	전	8,845.0	8,426.0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로*길 **, ***동 ***호 (**동*가, ****)	
63-1	광원리	1303-2	전	8,845.0	923.0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로*길 **, ***동 ***호 (**동*가, ****)	
64	광원리	1303-6	전	70.0	70.0	손*택	강원도 홍천군 내면 **리	
65	광원리	산64-1	임	187.0	187.0	전*표	서울특별시 동작구 ****로 28, 104동 1004호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66	광원리	1303-5	전	792.0	182.0	손*택	강원도홍천군내면**리	
67	광원리	1303-4	전	117.0	117.0	손*택	강원도 홍천군 내면 **리	
68	광원리	1303	전	1,302.0	58.0	전*원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 **	
69	광원리	1304-3	도	104.0	18.9	국	농*****부	

70	광원리	1304-1	전	2,724.0	699.0	전*원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 **	
71	광원리	1304-2	대	380.0	17.0	전*원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 **	
71-1	광원리	1304-8	대	116.0	2.0	전*원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 **	
72	광원리	1282	전	8,268.0	64.3	국	홍*군	
73	광원리	1202	전	69.0	69.0	최*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로 ***번길 **, ***동 ***호 (**아파트)	
74	광원리	1202-1	전	301.0	177.0	최*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로 ***번길 **, ***동 ***호 (**아파트)	
75	광원리	산61	임	15,952.0	10.0	안*균	경기도 구리시 ****로 **, ***동 ***호(**동, ********아파트)	
75-1	광원리	산61	임	15,952.0	1,107.0	안*균	경기도 구리시 ****로 **, ***동 ***호(**동, ********아파트)	
76	광원리	1198	전	4,147.0	1,833.0	최*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로 ***번길 **, ***동 ***호 (**아파트)	
77	광원리	1304-7	도	798.0	281.4	국	농******부	
78	광원리	1200	전	733.0	527.0	최*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로 ***번길 **, ***동 ***호 (**아파트)	
79	광원리	산60-1	임	46,391.0	1,263.0	********** **종중	홍천군 내면 광원*리	
79-1	광원리	산60-1	임	46,391.0	80.0	********** **종중	홍천군 내면 광원*리	
80	광원리	산60-4	임	922.0	922.0	박*찬 외 3인	원성군 판부면 **리 **	
81	광원리	산60-5	임	483.0	483.0	박*찬 외 3인	원성군 판부면 **리 **	
82	광원리	산59-1	임	1,394.0	77.0	********** **종중	홍천군 내면 광원*리	
83	광원리	1215-1	창	510.0	8.0	***리 영농회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 **-**	
84	광원리	1215-15	전	2,655.0	168.0	전*조	강원도 홍천군 내면 ***길 **	
85	광원리	산 59-4	임	193.0	150.6	국	건*부	
86	광원리	산 59-5	임	430.0	124.6	국	건*부	
87	광원리	산 59-6	임	1,470.0	25.3	국	건*부	
88	광원리	산 60-10	임	1,073.0	96.9	국	건*부	
89	광원리	산 60-6	임	5,290.0	243.9	국	건*부	
90	광원리	산 60-8	임	299.0	56.9	국	건*부	
91	광원리	산 60-9	임	267.0	155.0	국	건*부	

홍천군 공고 제2020 - 1970호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구내용 및 청구인명부 열람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청구내용 및 청구인 명부 열람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홍 천 군 수

1. 청구인 대표자 : 고 종 준 (홍천군 남면 제곡2길 **)**

2. 청구취지 및 이유

-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축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 증가 추세
-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정환경 홍천군 이미지 훼손
-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반영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함.

3. 청구인명부 연서 주민 수 : 2,574명

※ 2020년 홍천군 19세 이상 연서대상 주민 수 : 1,507명 이상

4.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0. 10. 26. ~ 11. 04. (10일간)

나. 장 소 : 홍천군 환경과 및 주소지 관할 해당 면사무소
(화촌면, 두촌면, 동면, 남면, 북방면, 내면)

다. 이의신청 방법 :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청구인 명부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5. 그 밖의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 물환경담당으로 문의바랍니다.

(☎ 033-430-2610, FAX 033-430-2609)

붙임 이의신청서(서식) 및 조례안 1부.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3.31.>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 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대상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 제정 청구의 **청구인 명부**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별표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양, 사슴, 소, 말
  1) 건축면적 1,000㎡ 미만: 300m 이상
  2) 건축면적 1,000㎡ 이상: 500m 이상
 나. 젖소 ; 1,000m 이상
 다. 돼지, 개, 닭, 오리
  1) 건축면적 1,000㎡ 미만: 1000m 이상
  2) 건축면적 1,000㎡ 이상: 2000m 이상
2. 단독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양, 사슴, 소, 말
  1) 건축면적 1,000㎡ 미만: 300m 이상
  2) 건축면적 1,000㎡ 이상: 500m 이상
 나. 젖소 ; 1,000m 이상
 다. 돼지, 개, 닭, 오리
  1) 건축면적 1,000㎡ 미만: 1000m 이상
  2) 건축면적 1,000㎡ 이상: 2000m 이상

7. 면단위로 환경그린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축산의 조직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환경의 개선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제1항 관련)
(1,2 생략)
3.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군 병영시설(생활관, 군인 병원 등),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경계의 가장 가까운 지적 임야도상 직선거리로 하며, 축종별 사육제한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축종 및 규모별 사육제한

<table>
<tr><th>축 종</th><th>규 모</th><th>제한거리(m)</th></tr>
<tr><td rowspan="2">양, 사슴, 소, 말</td><td>450㎡ 미만</td><td>100</td></tr>
<tr><td>450㎡ 이상</td><td>130</td></tr>
<tr><td>젖소</td><td></td><td>250</td></tr>
<tr><td rowspan="2">돼지,개,닭,오리</td><td>1,000㎡미만</td><td>1,000</td></tr>
<tr><td>1,000㎡이상</td><td>2,000</td></tr>
</table>
</td><td>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제1항 관련)
(1,2 생략)
3.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군 병영시설(생활관, 군인 병원 등),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경계의 가장 가까운 지적 임야도상 직선거리로 하며, 축종별 사육제한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축종 및 규모별 사육제한

<table>
<tr><th>축 종</th><th>규 모</th><th>제한거리(m)</th></tr>
<tr><td rowspan="2">양, 사슴, 소, 말</td><td>1000㎡미만</td><td>300</td></tr>
<tr><td>1000㎡이상</td><td>500</td></tr>
<tr><td>젖소</td><td></td><td>1,000</td></tr>
<tr><td rowspan="2">돼지,개,닭,오리</td><td>1,000㎡미만</td><td>1,000</td></tr>
<tr><td>1,000㎡이상</td><td>2,000</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나.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사육 제한
<table>
<tr><th>축 종</th><th>규 모</th><th>제한거리(m)</th></tr>
<tr><td rowspan="2">양, 사슴, 소, 말</td><td>450㎡ 미만</td><td>30</td></tr>
<tr><td>450㎡이상</td><td>50</td></tr>
<tr><td>젖소</td><td></td><td>70</td></tr>
<tr><td rowspan="2">돼지,개,닭,오리</td><td>1,000㎡미만</td><td>300</td></tr>
<tr><td>1,000㎡이상</td><td>500</td></tr>
</table>
4,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45m 이내 입지제한
5. 생략
6.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입지제한. 단, 홍천강을 제외한 지방 하천은 20m로 한다.

<신 설>
</td><td>
나.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사육 제한
<table>
<tr><th>축 종</th><th>규 모</th><th>제한거리(m)</th></tr>
<tr><td rowspan="2">양, 사슴, 소, 말</td><td>1000㎡미만</td><td>300</td></tr>
<tr><td>1000㎡이상</td><td>500</td></tr>
<tr><td>젖소</td><td></td><td>1,000</td></tr>
<tr><td rowspan="2">돼지,개,닭,오리</td><td>1,000㎡미만</td><td>1,000</td></tr>
<tr><td>1,000㎡이상</td><td>2,000</td></tr>
</table>
4,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입지제한
5. 생략
6.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입지제한. 단, 홍천강을 제외한 지방하천은 70m로 한다.

7. 면단위로 환경그린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축산의 조직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환경의 개선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한다.
</td></tr>
</table>

홍천군 공고 제2020-1975호

홍천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 반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0. 10. 27. ~ 11. 15. (20일)

3. 개정이유

-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에서 건의한 과대반의 분반 및 경계조정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별표' 중 홍천읍, 남면 반 명칭 및 구역 조정

읍.면	현행	개정	증.감	증감사유
합 계	총 1,054개 반	총 1,056개 반	2개 반 증	
홍천읍	희망2리 : 16개 반	희망2리 : 8개 반	8개 반 감	미진동백APT 희망12리로 분리
	희망12리 : 미구성	희망12리 : 8개 반	8개 반 증	
	삼마치1리 : 5개 반	삼마치1리 : 6개 반	1개 반 증	4반 세대 수 증가
	남노일리 : 2개 반	남노일리 : 3개 반	1개 반 증	2반 세대 수 증가
	신대1리 : 4개 반	신대1리 : 4개 반	반 구획 조정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으로 신대1리 129필지(9가구)를 시동1리로 편입
	시동1리 : 2개 반	시동1리 : 2개 반	반 구획 조정	

※ '별표'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 개정전문 붙임

- 홍천읍 희망12리 신설

○ 희망1리~희망11리 → 희망1리~희망12리
- 홍천읍 삼마치1리 반 분구
○ 삼마치1리 1반~5반 → 삼마치1리 1반~6반
- 남면 남노일리 반 분구
○ 남노일리 1반~2반 → 남노일리 1반~3반
- 남면 신대리 법정리 경계 조정
○ 남면 신대1리 129필지를 남면 시동1리로 편입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430-2216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홍천군 규칙 제 호

홍천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 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0. . .>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명 칭		구 역
홍천읍	진 1 리 제 1 반	진 1 리 안읍내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
	제 7 반	〃
	진 2 리 제 1 반	진 2 리 미룩당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
	진 3 리 제 1 반	진 3 리 안읍내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미룩당 일부
	제 5 반	〃
	제 6 반	중앙 연립주택
	신장대1리 제 1 반	신장대1리 시장통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학다리 일부
	제 5 반	〃
	제 6 반	〃
	제 7 반	한서 연립주택
	제 8 반	무궁화 연립주택
	신장대2리 제 1 반	신장대2리 시장통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 , 진달래연립주택 지역
	제 7 반	시장통 일부
	신장대3리 제 1 반	신장대3리 시장통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명 칭		구 역
홍천읍	희 망 1 리 제 1 반	희 망 1 리 미진APT 1동 101~112, 201~212호
	제 2 반	301~312, 401~412호
	제 3 반	501~512, 601~612호
	제 4 반	701~710, 801~810호
	제 5 반	901~910, 1001~1010호
	제 6 반	1104~1110, 1204-1210호
	제 7 반	미진APT 2동 일원
	제 8 반	송학연립 일원
	제 9 반	향교골 일부
	제 10 반	〃
	희 망 2 리 제 1 반	희 망 2 리 마지기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마지기 일부
	제 7 반	전골 일원
	제 8 반	마지기 일부

명 칭		구 역
홍천읍	희 망 3 리 제 1 반	희 망 3 리 잿골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
	제 7 반	태양연립
	제 8 반	광신연립
	제 9 반	장미연립
	제 10 반	대하임대연립 일부
	제 11 반	〃
	제 12 반	토우아파트
	제 13 반	그린빌라
	희 망 4 리 제 1 반	희 망 4 리 수정아파트
	제 2 반	일성아트빌라
	제 3 반	희망연립
	제 4 반	터미널 주변 지역(329-5, 329-10~12, 354-12~13, 354-17, 354-20, 354-45, 354-60, 354-112, 354-118, 354-121, 354-149, 354-163, 355-1, 356-3~4, 359, 360-1~4, 393, 395-16, 351-7, 396-1~11, 397-4~5, 398-3, 398-10, 398-13, 398-21번지)
	제 5 반	화양연립주택
	제 6 반	화양연립주택 주변 지역(326-3, 326-8, 326-9, 326-12, 326-30, 326-31, 327-1, 327-6, 327-7, 327-8, 327-21, 327-28, 327-29, 329-1, 330-1, 330-2, 330-3, 331-4, 331-15, 331-16, 332-3, 332-24, 332-26, 332-27, 332-30번지)
	제 7 반	금강연립주택
	제 8 반	안정스위트타워
	제 9 반	안정스위트타워 주변지역(327-25, 328-5~8, 371-1, 371-2, 371-6, 370-9, 370-12, 370-15, 370-24~26, 370-76, 328-10~11, 329-7~8, 361-1~9, 362-1, 362-13~14, 367-4, 367-17, 368-14번지)
	제 10 반	홍천제일교회 주변 지역(327-3, 327-9, 327-11, 327-14, 327-15, 327-16, 327-19, 327-23, 327-37, 370-1~2, 370-7~8, 370-23, 370-36, 370-38, 370-41~42, 370-61~62, 370-65~67, 372-1~2, 372-8, 373-1, ~24, 374-1, 375-2번지)

명 칭		구 역
홍천읍	희 망 5 리 제 1 반	희 망 5 리 희망골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
	제 7 반	〃
	제 8 반	성심 연립주택
	제 9 반	삼보아파트 지역
	희 망 6 리 제 1 반	희 망 6 리 학다리 일부, 마지기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
	제 7 반	〃
	제 8 반	〃
	제 9 반	〃
	제 10 반	홍천 연립주택
	희 망 7 리 제 1 반	희 망 7 리 송학정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종전 희망7리 6반에서 우일아파트, 동일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제 7 반	일원
	제 8 반	송학정 일부
	제 9 반	〃
	제 10 반	〃
	제 11 반	〃
	제 12 반	만복빌라 지역
		우일아파트, 동일아파트 지역
	희 망 8 리 제 1 반	희 망 8 리 오리장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
	희 망 9 리 제 1 반	희 망 9 리 군기들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명 칭		구 역
홍천읍	희 망 1 0 리 제 1 반	희망10리 향교골 일부
	제 2 반	건우연립 일원
	제 3 반	우신APT 가동 101~105, 201~ 205, 301~305, 401~405, 501~505호
	제 4 반	가동 106~109, 206~209, 306~309, 406~609, 506~509호
	제 5 반	가동 110~113, 210~213,310~313, 410~413,510~513호
	제 6 반	나동 101~105, 201~205, 301~305, 401~405, 501~505호
	제 7 반	나동 106~109, 206~209, 306~309, 406~409, 506~509호
	제 8 반	나동 110~113, 210~213, 310~313, 410~413,510~513호
	제 9 반	우신빌라 A동 101~106, 201~206, 301~306, 401~406, 501~506호
	제 1 0 반	B동 101~105, 201~205, 301~305, 401~405,501~505호
	희 망 1 1 리 제 1 반	희망11리 신아1A 101동 101~412호
	제 2 반	101동 501~812호
	제 3 반	101동 901~1212호
	제 4 반	101동 1301~1511호
	제 5 반	102동 201~808호
	제 6 반	102동 901~1508호
	제 7 반	201동 201~1504호
	제 8 반	202동 201~610호
	제 9 반	202동 701~1110호
	제 1 0 반	202동 1201~1510호
	희 망 1 2 리 제 1 반	희망12리 미진2차APT 1동 101~106, 201~206, 301~306, 401~406, 501~506, 601~606호
	제 2 반	〃 1동 701~706, 801~806, 901~906, 1001~ 1006, 1101~1106호
	제 3 반	〃 1동 107~112, 207~212, 307~312, 407~412, 507~512, 607~612호
	제 4 반	〃 1동 707~712, 807~812, 907~912,1007~1014, 1107~1114호
	제 5 반	〃 2동 101~105, 201~205, 301~305, 401~405, 501~505, 601~605호
	제 6 반	〃 2동 701~705, 801~805, 901~905, 1001~1005, 1101~1105, 1201~1205호
	제 7 반	〃 2동 106~110, 206~210, 306~310, 406~410, 506~510, 606~610호
	제 8 반	〃 2동 706~710, 806~810, 906~910, 1006~1010, 1106~1110, 1206~1210호

명 칭		구 역
홍천읍	갈 마 곡 1 리 제 1 반	갈마곡1리 사내정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
	제 7 반	〃
	제 8 반	작은골 일원
	제 9 반	큰골 일원
	제 10 반	동부 연립주택
	제 11 반	미진3차 강변A 101~1402호
	제 12 반	미진5차 강변A 101~1402호
	갈 마 곡 2 리 제 1 반	갈마곡2리 닭바위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속개 일원
	제 5 반	새말 일원
	갈 마 곡 3 리 제 1 반	갈마곡3리 대기골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
	제 7 반	〃
	제 8 반	작은골 일원
	제 9 반	큰골 일원
	제 10 반	현대연립 1동
	제 11 반	현대연립 2동
	제 12 반	태림아파트 1~4층
	제 13 반	〃 5~8층
	제 14 반	〃 9~14층
	갈 마 곡 4 리 제 1 반	갈마곡4리 주공1차A 101동 101~1504호
	제 2 반	102동 101~1504호
	제 3 반	103동 101~806호
	제 4 반	103동 901~1506호
	제 5 반	104동 101~806호
	제 6 반	104동 901~1506호
	제 7 반	105동 101~806호
	제 8 반	105동 901~1506호
	제 9 반	106동 101~806호
	제 10 반	106동 901~1506호
	제 11 반	107동 101~1504호
	제 12 반	108동 101~806호
	제 13 반	108동 901~1506호
	제 14 반	109동 101~806호
	제 15 반	109동 901~1506
	제 16 반	110동 101~806호
	제 17 반	110동 901~1506호

명 칭		구 역
홍천읍	갈 마 곡 5 리 제1반	갈마곡5리 주공2차아파트 201동 101~1301, 102~1302
	제2반	201동 103~1303, 104~1304
	제3반	202동 101~1301, 102~1302
	제4반	202동 103~1303, 104~1304
	제5반	203동 101~1501, 102~1502
	제6반	203동 103~1503, 104~1504
	제7반	203동 105~1505, 106~1506
	제8반	204동 101~1501, 102~1502
	제9반	204동 103~1503, 104~1504
	제10반	204동 105~1505, 106~1506
	제11반	205동 101~1501, 102~1502
	제12반	205동 103~1503, 104~1504
	제13반	205동 105~1505, 106~1506
	제14반	206동 101~1501, 102~1502
	제15반	206동 103~1503, 104~1504
	제16반	206동 105~1505, 106~1506
	갈 마 곡 6 리 제1반	갈마곡6리 신성미소지움아파트 101동 101~1501, 102~1502
	제2반	101동 103~1503, 104~1504
	제3반	102동 101~1501, 102~1502
	제4반	102동 103~1503, 104~1504
	제5반	103동 101~1501, 102~1502
	제6반	103동 103~1503, 104~1504
	제7반	104동 101~1501, 102~1502
	제8반	104동 103~1503, 104~1504
	제9반	105동 101~1501, 102~1502
	제10반	105동 103~1503, 104~1504
	제11반	106동 101~1501, 102~1502
	제12반	106동 103~1503, 104~1504
	제13반	107동 101~1501, 102~1502
	제14반	107동 103~1503, 104~1504
	제15반	108동 101~1501, 102~1502
	제16반	108동 103~1503, 104~1504

명 칭		구 역
홍천읍	갈마곡7리 제1반	갈마곡7리 홍천 오드카운티아파트 101동 101~1601, 102~1602
	제2반	101동 103~1303, 104~1704
	제3반	101동 105~1505, 106~1506
	제4반	102동 201~1201, 102~1602
	제5반	102동 103~1303, 104~1704
	제6반	102동 105~1505, 106~1506
	제7반	103동 201~1201, 102~1702
	제8반	103동 203~1803, 104~1704, 105~1005
	제9반	104동 201~1701, 102~1702
	제10반	104동 203~1803, 104~1804, 105~1005
	제11반	105동 201~1801, 102~1802
	제12반	105동 203~1803, 104~1804, 105~1005
	제13반	106동 201~1701, 102~1702
	제14반	106동 203~1803, 104~704, 105~905
	제15반	107동 101~1501, 102~1402
	제16반	107동 103~1303, 104~704
	제17반	107동 105~1105, 106~906
	제18반	108동 101~1301, 102~1702
	제19반	108동 103~1503, 104~1504
	검율리 제 1 반	검율리 양지말 일원
	제 2 반	웅담말 일원
	제 3 반	기와골 일원
	제 4 반	야류갱이 일원
	제 5 반	월드2차 연립 101동 101~412호
	제 6 반	〃 102동 101~109, 201~209, 301~309, 401~409호
	제 7 반	〃 102동 110~116, 210~216, 301~316, 410~416호
	와동1리 제 1 반	와동1리 갈매기 일원
	제 2 반	안말 일원
	제 3 반	중신대 일원
	와동2리 제 1 반	와동2리 외촌 일원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외촌 일원
	제 5 반	수태골 일원
	제 6 반	간촌 일부
	제 7 반	간촌 일부

명 칭		구 역
홍천읍	결 운 1 리 제 1 반	결 운 1 리 두루봉 일부
	제 2 반	〃
	제 3 반	고개마루 일원
	제 4 반	윗결운 일원
	결 운 2 리 제 1 반	결 운 2 리 윗결운 일부
	제 2 반	양지말 일원
	제 3 반	운골 일원
	제 4 반	베루들 일원
	태 학 리 제 1 반	태 학 리 대기골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태학골 일부
	제 5 반	〃
	연 봉 1 리 제 1 반	연 봉 1 리 안말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
	제 7 반	〃
	제 8 반	〃
	제 9 반	〃
	연 봉 2 리 제 1 반	연 봉 2 리 254, 255-2, 255-7~9, 255-11~15, 255-32~34, 255-43, 255-45, 256-2~6, 262-1, 262-3, 262-5, 263-5~9, 264-5~19, 265, 265-1, 266-2~3, 267-1~4, 268-6, 269-1, 269-9~11, 269-13~14, 269-17, 270-1, 270-3, 408-13~14, 408-24~31, 409-7번지
	제 2 반	용민스위트빌 1,2차 연립
	제 3 반	벼베기 일부
	제 4 반	225-3, 225-8~10, 225-12, 249-1, 249-4, 250-5, 272-2, 272-4, 272-20번지
	제 5 반	벼베기 일부
	제 6 반	214-9, 215, 227-1~6, 218-1, 225-14, 225-7, 225-2, 248-1, 248-7, 249-3, 249-5~7, 250-7~12, 250-23~24, 250-30, 250-35, 250-37, 250-44, 250-58, 251-5~8, 251-16, 221번지(햇살빌라2차)
	제 7 반	벼베기 일부
	제 8 반	〃
	제 9 반	〃

명 칭		구 역
홍천읍	연 봉 3 리 제 1 반	연 봉 3 리 안말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연봉농협마트 주변 지역(베네치아아파트 제외)
	제 7 반	베네치아아파트
	제 8 반	469, 469-1~19번지
	제 9 반	470, 470-1~19, 476, 476-1~5번지
	제 10 반	471, 471-1~19번지
	제 11 반	472, 472-1~19, 473, 473-1~19, 474, 474-1~7, 475번지
	연 봉 4 리 제 1 반	연 봉 4 리 화랑아파트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
	제 7 반	〃
	연 봉 5 리 제 1 반	연 봉 5 리 삼보빌라 가동
	제 2 반	〃 나동
	제 3 반	492, 492-1~7, 498-1~8, 499-1~2, 500-1~8, 501-1~7, 506-1~10, 507-1~10, 508-1~2번지
	제 4 반	466-1~17번지
	제 5 반	456-1~13번지
	제 6 반	457-1~4번지
	제 7 반	465-1~12번지
	제 8 반	463-1~10번지
	제 9 반	464-1~10번지
	제 10 반	502-1~13, 503-1~14, 504-1~3, 505-1~4, 506-1~10, 509-1~4번지
	제 11 반	487, 487-1~13, 488, 488-1~13, 490, 490-1~7, 491, 491-1~3번지
	제 12 반	485, 485-1~21, 486, 486-1~9번지
	제 13 반	483, 483-1~19, 484, 484-1~19번지
	제 14 반	477, 477-1~21, 478, 478-1~21번지
	제 15 반	479, 479-1~11, 480, 480-1~17, 481, 481-1~7, 482, 482-1번지, 93-1, 93-2번지 일원

명 칭		구 역
홍천읍	연 봉 6 리 제 1 반	연 봉 6 리 삼호APT 1동 101~108, 201~208, 301~308, 401~408, 501~508, 601~608호
	제 2 반	〃 1동 109~114, 209~214, 309~314, 409~414, 509~514, 609~614호
	제 3 반	〃 1동 115~120, 215~220, 315~320, 415~420, 515~520, 615~620호
	제 4 반	〃 2동 101~106, 201~206, 301~306, 401~406, 501~506호
	제 5 반	〃 2동 107~112, 207~212, 307~312, 407~412, 507~512호
	제 6 반	〃 3동 101~108, 201~208, 301~308, 401~408, 501~508호
	제 7 반	남산골 일부
	연 봉 7 리 제 1 반	연 봉 7 리 현대A 101동 101~1501, 102~1502
	제 2 반	〃 101동 103~1503, 104~1504
	제 3 반	〃 101동 105~1505, 106~1506
	제 4 반	〃 101동 107~1507
	제 5 반	〃 102동 101~1501, 102~1502
	제 6 반	〃 102동 103~1503, 104~1504
	제 7 반	〃 102동 105~1505, 106~1506
	제 8 반	〃 103동 101~1501, 102~1502
	제 9 반	〃 103동 103~1503, 104~1504
	제 10 반	〃 103동 105~1505, 106~1506
	제 11 반	〃 103동 107~1507, 108~1508
	제 12 반	〃 103동 109~1509, 110~1510
	제 13 반	〃 104동 101~1501, 102~1502
	제 14 반	〃 104동 103~1503, 104~1504
	제 15 반	〃 104동 105~1505, 106~1506
	제 16 반	〃 105동 101~1501, 102~1502
	제 17 반	〃 105동 103~1503, 104~1504
	제 18 반	〃 105동 105~1505, 106~1506
	연 봉 8 리 제 1 반	연 봉 8 리 청솔A 101동 101~411호
	제 2 반	〃 101동 501~811호
	제 3 반	〃 101동 901~1211호
	제 4 반	〃 101동 1301~1511호
	제 5 반	〃 102동 101~510호
	제 6 반	〃 102동 601~1010호
	제 7 반	〃 102동 1101~1510호
	제 8 반	〃 103동 101~510호
	제 9 반	〃 103동 601~1010호
	제 10 반	〃 103동 1101~1510호
	제 11 반	〃 104동 101~411호
	제 12 반	〃 104동 501~811호
	제 13 반	〃 104동 901~1211호
	제 14 반	〃 104동 1301~1411, 1504~1511호

명 칭			구 역
홍천읍	연 봉 9 리	제1반	연봉9리 세영더조은아파트 101동 101~1001, 102~1002
		제2반	101동 103~1503, 104~1504
		제3반	101동 105~1505, 106~1506
		제4반	102동 101~1401, 102~1402
		제5반	102동 103~1403, 104~1404
		제6반	103동 101~1001, 102~1502
		제7반	103동 103~1503, 104~1504
		제8반	103동 105~1505, 206~1306
		제9반	104동 101~1401, 102~1402
		제10반	105동 101~1001, 202~1002
		제11반	105동 103~1503, 104~1504
		제12반	105동 105~1505, 206~1106
	연 봉 1 0 리	제1반	연봉10리 연봉아이파크아파트 101동 101~1501, 102~1502
		제2반	101동 103~1503, 104~1504
		제3반	102동 101~1501, 102~1502
		제4반	102동 103~1503, 104~1504
		제5반	103동 101~1501, 102~1502
		제6반	103동 103~1503, 104~1504
		제7반	103동 105~1505, 106~1506
		제8반	104동 201~1501, 102~1502
		제9반	104동 103~1503, 104~1504
		제10반	104동 105~1505, 106~1506
		제11반	105동 101~1501, 202~1502, 203~1503
		제12반	105동 104~1504, 105~1505
		제13반	105동 206~1506, 107~1507
	하 오 안 1 리	제 1 반	하오안1리 연안골 일원
		제 2 반	느시골, 구시울 일원
		제 3 반	연애골 일부
		제 4 반	〃
		제 5 반	화랑마을 일원
		제 6 반	월드1차아파트 101~108, 201~208, 301~308, 401~408, 501~508호
		제 7 반	월드1차아파트 109~116, 209~216, 309~316, 409~416, 509~516호
		제 8 반	월드1차아파트 117~124, 217~224, 317~324, 417~424, 517~524호

명 칭		구 역
홍천읍	하오안2리 제 1 반	하오안2리 양지말 일부 (종전 1반, 2반 지역)
	제 2 반	〃 (종전 3반지역)
	제 3 반	〃 (종전 4반지역)
	제 4 반	〃 (종전 5반지역)
	제 5 반	〃 (종전 6반지역)
	제 6 반	〃 (종전 7반지역)
	하오안3리 제 1 반	하오안3리 삼호임대A 101동 101~413호
	제 2 반	101동 501~813호
	제 3 반	101동 901~1213호
	제 4 반	101동 1301~1513
	제 5 반	102동 101~510호
	제 6 반	102동 601~1010호
	제 7 반	102동 1101~1510호
	제 8 반	103동 101~807호
	제 9 반	104동 101~808호
	상오안리 제 1 반	상오안리 상촌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공골 일원
	제 4 반	샛말 일원
	제 5 반	청용 일원
	장전평1리 제 1 반	장전평1리 양지말 일부
	제 2 반	〃
	제 3 반	음지말 일부
	제 4 반	〃
	제 5 반	성산터 일원
	제 6 반	먹실 일원
	장전평2리 제 1 반	장전평2리 감골 일원, 먹실, 전골 일원
	제 2 반	안흥 일원
	제 3 반	갈골 전원마을
	삼마치1리 제 1 반	삼마치1리 양지말 일부
	제 2 반	큰말 일원
	제 3 반	원터 일부
	제 4 반	종전 솔골 일원 중 삼마치리 410~464, 470~539, 1022~1023, 산99~109번지를 제외한 일원
	제 5 반	종전 솔골 일원 중 삼마치리 8~9, 385~392, 465~469, 1020~1021번지를 제외한 일원
	제 6 반	원터 일부(종전 5반지역)

명 칭			구 역	
홍천읍	삼마치2리	제 1 반	삼마치2리	상고대 일원
		제 2 반		샘말 일원
		제 3 반		중고대 일원
		제 4 반		하고대 일원
		제 5 반		들골 일원
화촌면	송 정 리	제 1 반	송정리	본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웃 말 일원
		제 5 반		만내골 일원
	굴 운 리	제 1 반	굴운리	본부 일원
		제 2 반		원논골부락 일부
		제 3 반		〃
		제 4 반		작은골부락 일원
		제 5 반		큰골 일원
	구성포1리	제 1 반	구성포1	신내부락 일원
		제 2 반	리	버덩말 일원
		제 3 반		안말 일원
		제 4 반		오림촌 일원
	구성포2리	제 1 반	구성포2	큰무레이, 논들말 일원
		제 2 반	리	무수터 일원
		제 3 반		와가촌 일원
		제 4 반		도심이 일원
	풍천1리	제 1 반	풍천1리	덕밭재
		제 2 반		윗말 일원
	풍 천 2 리	제 1 반	풍천2리	신내 일부
		제 2 반		샛터, 벌대울 일원
	외삼포1리	제 1 반	외삼포1	장거리 일부
		제 2 반	리	새마을 일원
		제 3 반		아랫마을 일원
		제 4 반		웃말 일원
	외삼포2리	제 1 반	외삼포2	칠탄부락 일원
		제 2 반	리	건금리 일부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내삼포리	제 1 반	내삼포리	노내골 일부
		제 2 반		본부락 일부
		제 3 반		〃
		제 4 반		〃
	성 산 1 리	제 1 반	성산1리	일건 일부
		제 2 반		〃
		제 3 반		장거리 일부
		제 4 반		〃
		제 5 반		뒷말 일부
		제 6 반		〃
		제 7 반		아파트
		제 8 반		백이동 부락 일원

명 칭		구 역
화촌면	성 산 2 리 제 1 반	성 산 2 리 안말 일부
	제 2 반	새말 일원
	제 3 반	원평 일부
	제 4 반	〃
	야 시 대 1 리 제 1 반	야시대1리 행인교 일원
	제 2 반	벌말 일부
	제 3 반	〃
	제 4 반	〃
	야 시 대 2 리 제 1 반	야시대2리 귀밑말 및 미역제 일원
	제 2 반	양지말 및 수항 일원
	주 음 치 리 제 1 반	주 음 치 리 본무골 본부락 일원
	제 2 반	갈번지 일원
	제 3 반	고엽 일원
	제 4 반	수름재 일원
	제 5 반	밤나무골 일원
	군 업 1 리 제 1 반	군 업 1 리 조하대 일원
	제 2 반	군들 일원
	제 3 반	도광터 일원
	제 4 반	안말, 답련밭 일원
	군 업 2 리 제 1 반	군 업 2 리 양지말 일원
	제 2 반	안말 일부
	제 3 반	〃
	장 평 1 리 제 1 반	장 평 1 리 본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응골, 솔치 일원
	장 평 2 리 제 1 반	장 평 2 리 심복골 일원
	제 2 반	전들 일원
	제 3 반	골말 일원
	제 4 반	노루터 일원
두촌면	자 은 1 리 제 1 반	자 은 1 리 호주, 터둔지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광탄 일원
	자 은 2 리 제 1 반	자 은 2 리 나가장 일원
	제 2 반	자읍동 일부
	제 3 반	〃
	자 은 3 리 제 1 반	자 은 3 리 내후동 일부
	제 2 반	〃
	제 3 반	외부동 일원

명 칭			구 역	
두촌면	철 정 1 리	제 1 반	철 정 1 리	고개밑부락 일원
		제 2 반		안말 일원
		제 3 반		뚝넘어말 일원
		제 4 반		연애골 일원
	철 정 2 리	제 1 반	철 정 2 리	북장 일원
		제 2 반		아호 일원
		제 3 반		본부락 일원
		제 4 반		〃
	철 정 3 리	제 1 반	철 정 3 리	본부락 일원
		제 2 반		교동부락 일원
		제 3 반		북창부락 일원
		제 4 반		선평부락 일원
	역 내 리	제 1 반	역 내 리	분부락 일원
		제 2 반		소성, 황거리 일원
		제 3 반		평천부락 일원
		제 4 반		후평부락 일원
	천 현 1 리	제 1 반	천 현 1 리	샘재부락 일원
		제 2 반		신촌 일원
		제 3 반		경수, 하촌 일원
		제 4 반		경수, 창촌 장여울 일원
	천 현 2 리	제 1 반	천 현 2 리	평내, 하촌, 소평, 천연 일원
		제 2 반		평내 중촌, 태평천촌, 가리산부락 일원
		제 3 반		모로동 일원
	원 동 1 리	제 1 반	원 동 1 리	하촌 일원
		제 2 반		중촌 일원
		제 3 반		다리골 일원
	원 동 2 리	제 1 반	원 동 2 리	삼서기, 대리울 일원
		제 2 반		조덕골 일원
	장 남 1 리	제 1 반	장 남 1 리	남덕동 일부
		제 2 반		〃
		제 3 반		원거리, 강지동 일원
	장 남 2 리	제 1 반	장 남 2 리	송정리 일원
		제 2 반		어구촌 일원
		제 3 반		장사장 일원
	괘 석 1 리	제 1 반	괘 석 1 리	수태, 개암평, 용수묵, 천수대, 물구비 부락 일원
		제 2 반		탑골 일원, 상괘석 일부
	괘 석 2 리	제 1 반	괘 석 2 리	대명제, 다름재부락, 물구비 부락 일원
		제 2 반		범의터 일원, 상괘석 일부

명 칭			구 역
내촌면	도 관 1 리	제 1 반	도 관 1 리 때수 일원
		제 2 반	오동촌 일원
		제 3 반	〃
		제 4 반	〃
	도 관 2 리	제 1 반	도 관 2 리 사갑 일원
		제 2 반	구만리 일원
		제 3 반	안골 일원
		제 4 반	거주포 일원
		제 5 반	거스레미 일원
		제 6 반	우답풍 일원
	도 관 3 리	제 1 반	도 관 3 리 둔덕말 일원
		제 2 반	대곡 일부
		제 3 반	〃
		제 4 반	〃
	물 걸 1 리	제 1 반	물 걸 1 리 길현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동창 일부
		제 4 반	〃
		제 5 반	담촌 일부
		제 6 반	복곡 일원
	물 걸 2 리	제 1 반	물 걸 2 리 조운 일원
		제 2 반	신촌 일원
		제 3 반	회룡, 점촌 일원
		제 4 반	모퉁이 일원
		제 5 반	장수원 일부
		제 6 반	물걸2리 장수원 일부, 조상동 일원
		제 7 반	김촌 일원
	와 야 1 리	제 1 반	와 야 1 리 본부락 일부
		제 2 반	본부락 일부
		제 3 반	가령동 일부
		제 4 반	율목동, 가령동 일원
	와 야 2 리	제 1 반	와 야 2 리 망전 일원
		제 2 반	연계동 일원
		제 3 반	봉소대 일원
		제 4 반	비성동 일원
		제 5 반	〃
	서 곡 리	제 1 반	서 곡 리 내서곡 일원
		제 2 반	대여창 일원
		제 3 반	소여창 일원
		제 4 반	외서곡 일원

명 칭		구 역
내촌면	답 풍 리 제 1 반	답 풍 리 용포상 일부
	제 2 반	〃
	제 3 반	삼선동 일원
	제 4 반	송정 일원
	제 5 반	논골 일원
	제 6 반	가래을
	화 상 대 1 리 제 1 반	화상대1리 사탄 일부
	제 2 반	〃
	제 3 반	본부락
	제 4 반	월부대 일원
	제 5 반	다름재 일원
	제 6 반	솔골, 장골 일원(종전 3반에서 분반)
	화 상 대 2 리 제 1 반	화상대2리 정신동 일원, 어은동 일부
	제 2 반	어은동 일부
	제 3 반	하연지 일부
	제 4 반	〃
	제 5 반	상연지, 김촌 일원
	문 현 리 제 1 반	문 현 리 상촌 일원
	제 2 반	하촌 일원
	광 암 리 제 1 반	광 암 리 가죽동, 너벙바위, 영와대, 황철동, 상괘식 일원
	제 2 반	군유동 일원
서석면	풍 암 1 리 제 1 반	풍 암 1 리 시장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
	제 6 반	시장부락 일부
	제 7 반	〃
	제 8 반	〃
	제 9 반	조각동 일부
	제 10 반	〃
	제 11 반	장막 일원
	풍 암 2 리 제 1 반	풍 암 2 리 덕발치부락 일원
	제 2 반	현하 일원
	제 3 반	후동 일부
	제 4 반	〃
	제 5 반	장 막 일원
	검 산 1 리 제 1 반	검 산 1 리 효제곡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명 칭			구 역	
서석면	검 산 2 리	제 1 반	검 산 2 리	버들구미부락 일원
		제 2 반		구방 일부
		제 3 반		삼산 일원
		제 4 반		구방 일부
		제 5 반		삼산 일원
		제 6 반		명동, 진장동 일원
	생 곡 1 리	제 1 반	생 곡 1 리	도찬부락 일부
		제 2 반		도찬부락 일부
		제 3 반		광수동 일원
		제 4 반		판관터 일부
		제 5 반		〃
		제 6 반		판관터 일부, 푸죽동 일원
		제 7 반		곡죽동 일부
		제 8 반		곡죽동 일부 상대원 일원
	생 곡 2 리	제 1 반	생 곡 2 리	간촌 일부
		제 2 반		〃
		제 3 반		간촌, 교동일부
		제 4 반		교동 일부, 배나무골
	상 군 두 리	제 1 반	상 군 두 리	우시장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하 군 두 리	제 1 반	하 군 두 리	세둔지 일부
		제 2 반		〃
	청 량 1 리	제 1 반	청 량 1 리	거리말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상근암부락 일원
		제 4 반		노장촌 일부
		제 5 반		〃
		제 6 반		〃
		제 7 반		음양지부락 일부
	청 량 2 리	제 1 반	청 량 2 리	음양지부락 일부
		제 2 반		동두 일원
		제 3 반		보리울 일원
		제 4 반		명골, 삼년터 일원
	어 론 1 리	제 1 반	어 론 1 리	와둔지 일원
		제 2 반		용두지 일원
		제 3 반		〃
		제 4 반		방가대, 촌부락 일원
	어 론 2 리	제 1 반	어 론 2 리	방가대 일원
		제 2 반		야 초 일원
		제 3 반		소이금이, 대이금이
		제 4 반		황정골 일원

명 칭		구 역
서석면	수 하 1 리 제 1 반	수 하 1 리 가구동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누런동 일부
	제 4 반	누런동 일부
	제 5 반	음향곡 일원
	수 하 2 리 제 1 반	수 하 2 리 용호터 일원
	제 2 반	양지말 일원
	제 3 반	양항곡 일원
	제 4 반	외사동 일원
	제 5 반	내사동 일원
	제 6 반	황수터 일원
동면	속 초 1 리 제 1 반	속 초 1 리 덕현부락 일원
	제 2 반	떼둔지 일원
	제 3 반	등대 일원
	제 4 반	원포 일부
	제 5 반	〃
	속 초 2 리 제 1 반	속 초 2 리 유정촌, 속재울부락 일원
	제 2 반	이신촌 일원
	제 3 반	적봉 일원
	제 4 반	화동 일원
	제 5 반	숟이골 일원
	신 봉 리 제 1 반	신 봉 리 금터부락 일원
	제 2 반	본골 일원
	제 3 반	손골, 맛바위 일원
	덕 치 리 제 1 반	덕 치 리 여우재 일원
	제 2 반	거리말 일원
	제 3 반	큰말 일원
	제 4 반	양지말, 순장들 일원
	제 5 반	사카내미 일원
	제 6 반	〃
	성 수 리 제 1 반	성 수 리 성전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아래짓골 일부
	제 4 반	아래짓골 일부
	제 5 반	하수동 일부
	제 6 반	하수동 일부
	삼 현 리 제 1 반	삼 현 리 맞나무베기부락 일원
	제 2 반	옷삼재 일원
	제 3 반	뱃터 일원
	제 4 반	양지말, 무내미 일원
	방 양 리 제 1 반	방 양 리 조광, 곡촌부락 일원
	제 2 반	방양골 일원
	제 3 반	방아재 일원

명 칭			구 역	
동면	월 운 리	제 1 반	월 운 리	석봉 일부
		제 2 반		〃
		제 3 반		관터 일원
		제 4 반		갬운지 일원
		제 5 반		공주대 일원
		제 6 반		늘아뜰 일원
	후 동 리	제 1 반	후 동 리	구미 일원
		제 2 반		내후동, 산구머리 일원
		제 3 반		산구머리, 동막 일원
		제 4 반		답동북락 일원
	개 운 리	제 1 반	개 운 리	하석우부락 일원
		제 2 반		상석우부락 일원
		제 3 반		상석, 수촌 일원
		제 4 반		개운리 일원
		제 5 반		하석우 일원
	노 천 1 리	제 1 반	노 천 1 리	노현부락 일원
		제 2 반		양바티, 평촌부락 일부
		제 3 반		노천시장부락 일원
		제 4 반		평촌부락 일원
		제 5 반		송곡부락 일원
		제 6 반		덕우 일원
		제 7 반		신촌, 기왕촌 일원
		제 8 반		노정 일원
		제 9 반		효죽 일원
		제 10 반		공작동, 노대 일원
	노 천 2 리	제 1 반	노 천 2 리	조항부락 일원
		제 2 반		화방 일원
		제 3 반		가락골 일원
		제 4 반		물 골 일원
	좌 운 1 리	제 1 반	좌 운 1 리	화곡부락 일원
		제 2 반		장구목 일원
		제 3 반		샘골, 친곡, 구석동 일원
		제 4 반		부항 일원
		제 5 반		구석동 일원
	좌 운 2 리	제 1 반	좌 운 2 리	옷말 일원
		제 2 반		중간말 일원
		제 3 반		하둔지 일부
		제 4 반		〃
		제 5 반		희수대, 천개 일원
		제 6 반		예의촌 일원

명 칭			구 역
남면	양덕원1리	제 1 반	양덕원1리 본말부락 일부 중 43, 43-1, 44, 45, 45-1, 45-2, 46-1, 46-2, 47, 48, 206-1, 206-2,210-1~210-10, 211-1~211-9, 212, 212-1~212-5, 산24, 산25, 산26번지를 제외한 일원
		제 2 반	본말부락 일부
		제 3 반	앞비정 일원, 본말부락 일부
		제 4 반	본말부락 일부
		제 5 반	〃
		제 6 반	43, 43-1, 44, 45, 45-1, 45-2, 46-1, 46-2, 47, 48, 206-1, 206-2,210-1~210-10, 211-1 ~211-9, 212, 212-1~212-5, 산24, 산25, 산26번지 지역
	양덕원2리	제 1 반	양덕원2리 구중터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유목정1리	제 1 반	유목정1리 봉산천부락 일원
		제 2 반	수곡 일원
	유목정2리	제 1 반	유목정2리 삼거리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갈기리부락 일원
	신대1리	제 1 반	신대1리 종전 사기막부락 일부 중 신대리 420-5, 696, 696-1, 731, 732, 732-1~3, 733, 733-1~2, 734~741, 742-1~3, 743, 743-1, 744~746, 746-1, 747, 747-1, 748~750, 751, 793, 794-1~11, 795, 795-1, 796~805, 805-1, 806~808, 808-1~2, 809-1~2, 810, 810-1~2, 811, 812, 812-1, 813~817 ,817-1, 818~822, 822-1~4, 823, 823-1~2, 824, 825, 825-1~8, 826~830, 1473-37~39, 1483, 산157~160, 산162~164, 산164-1, 산164-3~8, 산165~166, 산178~181번지를 제외한 일원
		제 2 반	샛말 일원
		제 3 반	창말 일원
		제 4 반	막미리 일원
	신대2리	제 1 반	신대2리 하은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서은부락 일부
		제 4 반	버덩말 일부
		제 5 반	동은 일부
	시동1리	제 1 반	시동1리 종전 고음실 일부와 신대리 420-5, 696, 696-1, 731, 732, 732-1~3, 733, 733-1~2, 734~741, 742-1~3, 743, 743-1, 744~746, 746-1, 747, 747-1, 748~750, 751, 793, 794-1~11, 795, 795-1, 796~805, 805-1, 806~808, 808-1~2, 809-1~2, 810, 810-1~2, 811, 812, 812-1, 813~817, 817-1, 818~822, 822-1~4, 823, 823-1~2, 824, 825, 825-1~8, 826~830, 1473-37~39, 1483, 산157~160, 산162~164, 산164-1, 산164-3~8, 산165~166, 산178~181번지 일원
		제 2 반	들벼루 일원
		제 3 반	버덩말 일원
	시동2리	제 1 반	시동2리 점말 일원
		제 2 반	시장리 일부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움터골부락 일원

명 칭			구 역	
남면	시 동 3 리	제 1 반	시 동 3 리	상동 일원
		제 2 반		동사골 일부
		제 3 반		〃
		제 4 반		시동골 및 방축 일원
	시 동 4 리	제 1 반	시 동 4 리	송내부락 일원
		제 2 반		〃
		제 3 반		도출 일원
		제 4 반		샛터 일원
	시 동 5 리	제 1 반	시 동 5 리	군인아파트 1동
		제 2 반		군인아파트 2동
		제 3 반		군인아파트 3동
		제 4 반		군인아파트 5동
		제 5 반		군인아파트 6동
	유 치 1 리	제 1 반	유 치 1 리	방축부락 일원
		제 2 반		지산 일원
		제 3 반		하향화대 일원
		제 4 반		방골 일원
		제 5 반		상향화대 일원
	유 치 2 리	제 1 반	유 치 2 리	하유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상유 일원
		제 4 반		난터골 일원
		제 5 반		학동 일원
	월 천 1 리	제 1 반	월 천 1 리	요골 일원
		제 2 반		다락골 일원
		제 3 반		본말 일원
		제 4 반		앞멀 일원
		제 5 반		헌터골 일원
		제 6 반		가작골 일원
	월 천 2 리	제 1 반	월 천 2 리	화랑마을아파트 101동 101~1501, 102~1502
		제 2 반		〃 101동 103~1203, 104~1204
		제 3 반		〃 102동 101~1501, 102~1502
		제 4 반		〃 102동 103~1503, 104~1504
		제 5 반		〃 102동 105~1505, 106~1506
		제 6 반		〃 103동 101~1501, 102~1502
		제 7 반		〃 103동 103~1303, 104~1304
		제 8 반		〃 103동 105~1105, 106~1106
		제 9 반		〃 104동 101~1501, 102~1502
		제 10 반		포룡아파트
	명 동 리	제 1 반	명 동 리	안돌부락 일원
		제 2 반		〃
		제 3 반		음달말 일원
		제 4 반		수곡 일원
		제 5 반		새만을, 심방골 일원
	제 곡 리	제 1 반	제 곡 리	잣터 일원
		제 2 반		잣골 일원
		제 3 반		본마을 일부
		제 4 반		〃
	용 수 리	제 1 반	용 수 리	삭골부락 일원
		제 2 반		영아치 일원
		제 3 반		본말 일부, 웃말 일부
		제 4 반		〃

명 칭		구 역
남면	남노일리 제 1 반	남노일리 연애부락 일원
	제 2 반	종전 고드램이 부락 중 남노일리 37, 38, 149-1, 208, 209, 210, 211, 211-1~10, 212, 212-1~7, 213, 213-1~3, 213-10, 213-13~18, 213-20~21, 213-23, 213-25, 213-27, 213-34~35, 213-39~42, 213-44~46, 213-48~64, 213-69, 213-73~91, 213-93~105, 213-107~110, 214, 215, 215-14~23, 216-1~5, 216-7~18, 217, 217-1~16, 217-18~21, 218, 218-1~2, 219, 219-1~3, 220, 221, 221-1~2, 222, 222-1~2, 223, 224, 224-1~5, 225, 225-1~2, 225-4~8, 225-10~24, 225-26~28, 225-30~33, 226, 227, 228, 229-1~3, 229-5~6, 230, 230-1~3, 230-6~9, 230-11~12, 230-14, 231, 232, 233, 234, 234-1, 234-4~5, 234-7~9, 235, 235-1~5, 236, 236-1~2, 237, 237-1, 238, 238-1, 239, 239-2~3, 240, 240-2, 241, 242, 243, 244, 244-1, 245, 245-1~16, 246, 246-1~3, 247, 248, 248-1, 249, 249-1~7, 249-9~11, 249-13, 249-17~19, 249-21, 250, 251, 251-1~5, 252, 351, 351-1~3, 352, 353, 354, 354-1~2, 355, 355-1~2, 356, 357, 357-1, 358, 358-1, 359, 359-2~3, 360, 360-1, 368, 370, 371-1, 432, 산10-1, 산52-1~5, 산53, 산123, 산124-2, 산125, 산132-2~3, 산133-2~4, 산134-1~2, 산136, 산136-1, 산137, 산138, 산138-1~7, 산139, 산139-2, 산140, 산140-1, 산141, 산141-2~4, 산152~156, 산157-1~7 산158-1, 산159, 산159-3, 산160, 산161 번지를 제외한 일원
	제 3 반	종전 고드램이 부락 중 27, 27-1, 28, 28-1, 34, 34-1, 35, 36, 36-2~4, 39, 39-2, 40, 40-3, 41-1~3, 42, 43-1~6, 43-8~9, 43-12~15, 44, 44-1, 45, 45-1, 46, 47, 48, 145, 146, 147, 148-1~7, 149, 149-3~9, 150, 150-1~2, 151, 152, 153, 154, 155, 155-1, 156, 157, 157-1, 158, 159, 159-1~3, 160, 160-1~5, 161, 162, 162-1~3, 163, 164, 164-1~2, 165, 166-3, 167, 167-2~8, 168-1, 168-5, 170, 170-1, 171, 172, 173, 173-1, 174-1~2, 175, 175-1, 176, 176-1, 177, 177-1, 178, 178-1, 179, 180, 181, 181-1, 182, 182-1~3, 183, 183-1~3, 184, 184-1~8, 185, 186, 186-1~15, 187, 188, 189, 190, 190-1~2, 191, 192, 192-1~3, 193, 194, 194-1~4, 195, 195-1, 196, 197, 198, 199, 200, 200-1~13, 200-15, 201, 202, 202-1~3, 202-5~6, 203, 204, 204-1~2, 205, 206, 206-1, 207, 207-1~4, 253-1~7, 254, 254-1~2, 255-1~11, 255-13~20, 255-22~29, 256, 257-1~3,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6-1~8, 267, 268-2~6, 269, 270, 270-1, 271, 272, 273, 274, 274-1~3, 275, 275-1, 276, 277, 277-1, 277-3~10, 278, 279-1~3, 280, 280-1~2, 281, 281-1, 282-1~4, 283, 284-1~2, 285, 286, 287, 288, 289, 289-1,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0-1~2, 301, 301-1, 302, 303, 304, 305, 305-1, 306, 306-1, 307, 308, 308-1~3, 309, 309-1~2, 310, 311, 311-1, 312, 315, 316, 316-1, 316-3, 317, 317-1,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1~3, 326, 327, 327-3, 328-1, 328-3~4, 328-7~10, 329, 329-1~2, 330, 331, 331-1, 332, 332-1, 333, 333-1~4, 334, 334-1~3, 335, 335-1, 336, 337-1~22, 337-24~28, 337-34~35, 337-37~40, 337-42, 337-44~45, 337-47~50, 338, 339, 340, 340-1, 341, 342, 342-1, 343, 343-1, 344, 344-1~2, 345, 345-1, 346, 346-1~12, 347, 347-1~2, 348, 348-1, 349, 350, 350-1, 364, 364-1, 365-1~2, 366, 367, 367-1, 369-1~2, 369-4~7, 산28, 산28-1~2, 산28-11, 산29, 산29-2~4, 산30-1~3, 산31, 산31-1~6, 산32, 산32-1~3, 산33~36, 산36-1~5, 산37~38, 산38-1, 산39, 산39-1, 산40, 산40-1~2, 산41-1~9, 산42, 산42-1~3, 산43, 산43-1~9, 산44, 산44-1, 산44-3~4, 산45, 산45-1~3, 산46, 산46-3~4, 산47~51, 산159-4 번지를 제외한 일원

명 칭			구 역	
남면	화 전 1 리	제 1 반	화 전 1 리	벼루제 일원
		제 2 반		독장골 일원
		제 3 반		막거리 일원
	화 전 2 리	제 1 반	화 전 2 리	사방터 일부
		제 2 반		범노리 일원
		제 3 반		하길곡, 상길곡 일원
		제 4 반		사방터 일부
	화 전 3 리	제 1 반	화 전 3 리	아랫과우 일원
		제 2 반		백양치 일원, 웃과우 부락, 오도치 일원
서면	반 곡 리	제 1 반	반 곡 리	본부락 일원
		제 2 반		가무름 일원, 덕거리 일원, 오리골 일원
		제 3 반		망단이 일원, 늪둔지 일원
		제 4 반		뒷뜰 일원
	어 유 포 리	제 1 반	어 유 포 리	효지동 부락 일원
		제 2 반		효말 부락 일원
		제 3 반		〃
		제 4 반		석화촌 부락 일부
		제 5 반		〃
	팔 봉 1 리	제 1 반	팔 봉 1 리	큰마을 일원
		제 2 반		귀기 일원
		제 3 반		교동부락 일원
		제 4 반		중실이 일원
	팔 봉 2 리	제 1 반	팔 봉 2 리	오도치 일원
		제 2 반		쇠판이, 발화실, 원터, 한치골 일원
	굴 업 리	제 1 반	굴 업 리	백양치부락 일원
		제 2 반		안굴업 일원
		제 3 반		버덩말 일원
		제 4 반		솔골 일원
		제 5 반		버덩말 일원

명 칭			구 역	
서면	대 곡 1 리	제 1 반	대 곡 1 리	둔지말, 동장터 일원
		제 2 반		샛터 일원
		제 3 반		둔말 일원
		제 4 반		도장골, 점말 일원
	대 곡 2 리	제 1 반	대 곡 2 리	상귀량 일원
		제 2 반		새말 일원
		제 3 반		하귀량 일원
	중 방 대 리	제 1 반	중 방 대 리	아우라치 일원
		제 2 반		본부락 일원
		제 3 반		가일 일원
	길 곡 리	제 1 반	길 곡 리	한새울부락 일원
		제 2 반		장박골 일원
		제 3 반		상촌 일원
		제 4 반		남말 일원
	동 막 리	제 1 반	동 막 리	아래말 일원
		제 2 반		샛말 일원
		제 3 반		삼거리 일원
		제 4 반		신촌 일원
		제 5 반		점촌, 움골 일원
	모 곡 1 리	제 1 반	모 곡 1 리	도리소부락 일원
		제 2 반		가래소 일원
		제 3 반		설밀 일원
		제 4 반		점촌 일원
	모 곡 2 리	제 1 반	모 곡 2 리	아래말 일원
		제 2 반		중간말 일원
		제 3 반		웃말 일원
	모 곡 3 리	제 1 반	모 곡 3 리	보리골 일원
		제 2 반		방아골 일원
		제 3 반		장나골 일원
	모 곡 4 리	제 1 반	모 곡 4 리	새별 일원
		제 2 반		중간말 일원
		제 3 반		새말 일원
	마 곡 리	제 1 반	마 곡 리	말골부락 일원
		제 2 반		떼내 일원
	개 야 리	제 1 반	개 야 리	본말 일원
		제 2 반		아래말 일원
	두 미 리	제 1 반	두 미 리	덕거리, 양지말 일원
		제 2 반		도인촌부락 일부
		제 3 반		상촌일부, 도인촌부락 일부
		제 4 반		상촌일부, 거둔지부락, 오리골 일원
		제 5 반		필동 일원

명 칭			구 역	
북방면	상화계리	제 1 반	상화계리	아래마을 일원
		제 2 반		중간마을 일원
		제 3 반		골마을 일원
		제 4 반		윗마을 일원
		제 5 반		〃
		제 6 반		〃
		제 7 반		〃
	화동리	제 1 반	화동리	아래범골부락 일원
		제 2 반		웃범골 일부
		제 3 반		〃
		제 4 반		너부새 일부
		제 5 반		〃
	중화계리	제 1 반	중화계리	너구리터 일원
		제 2 반		능안부락 일부
		제 3 반		〃
		제 4 반		사지골 일원
	성동1리	제 1 반	성동1리	돌모루 일원
		제 2 반		용태울 일원
	성동2리	제 1 반	성동2리	갈걸부락 일원
		제 2 반		구정말 일원
		제 3 반		우수막 일원
		제 4 반		성골 일원
	북방1리	제 1 반	북방1리	엄성골 일원
		제 2 반		사랑말부락, 모골 일원
	북방2리	제 1 반	북방2리	매주정 일원
		제 2 반		사북촉 일원
		제 3 반		오소정 일원
		제 4 반		늑막골 일원
	능평리	제 1 반	능평리	능뜰 일원
		제 2 반		건너말 일원
		제 3 반		원골 일원
		제 4 반		유독동 일원
	부사원리	제 1 반	부사원	부사원 일원
	본궁리	제 1 반	본궁리	양지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옹달말 일원
	역전평리	제 1 반	역전평리	역밭들 일원
		제 2 반		거리말 일원
		제 3 반		게량리 일원
		제 4 반		밭치리 일원

명 칭		구 역	
북방면	원 소 리 제 1 반	원 소 리	배면 일원
	제 2 반		안말 일원
	제 3 반		벌업 일원
	구 만 리 제 1 반	구 만 리	구성말 일원
	제 2 반		와촌 일원, 백자동 일부
	제 3 반		백자동 일부
	제 4 반		운수동 , 북점일 일원
	노 일 리 제 1 반	노 일 리	본말 일부
	제 2 반		〃
	제 3 반		샛말 일원
	제 4 반		구룡밭 일원
	장 항 리 제 1 반	장 항 리	왜벌 일원
	제 2 반		누루곡 일원
	굴 지 리 제 1 반	굴 지 리	본말 일부
	제 2 반		본말 일부, 웃거리 일원
	도 사 곡 리 제 1 반	도사곡리	운들 일원
	제 2 반		도새울 일원
	소 매 곡 리 제 1 반	소매곡리	얼밀 일원
	제 2 반		굴계리 일원
	하 화 계 1 리 제 1 반	하화계1리	샛터부락 일원
	제 2 반		〃
	제 3 반		안골 일원
	제 4 반		새둔지 일원
	하 화 계 2 리 제 1 반	하화계2리	소단이 일부
	제 2 반		〃
	제 3 반		들터거리 일부
	제 4 반		들터거리 일부, 도둔 일원
	제 5 반		백이 일원
내면	창 촌 1 리 제 1 반	창 촌 1 리	본부락 일원
	제 2 반		증평 일원
	창 촌 2 리 제 1 반	창 촌 2 리	시장부락 일부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
	제 5 반		성지동 일원
	제 6 반		양수교 일부
	제 7 반		양수교 일부, 장항등 일원
	창 촌 3 리 제 1 반	창 촌 3 리	들마버들, 백성곧일원
	제 2 반		양지말 일원
	제 3 반		이전동 일원
	제 4 반		대한동 일원

명 칭			구 역
내면	광 원 1 리	제 1 반	광 원 1 리 장거리부락 일원
		제 2 반	〃
		제 3 반	〃
		제 4 반	양지말 일원
		제 5 반	샘골 일원
		제 6 반	을수 일원
	광 원 2 리	제 1 반	광 원 2 리 분부락 일원
		제 2 반	붉은덕 일원
		제 3 반	가덕 일원
		제 4 반	분투골 일원
	광 원 3 리	제 1 반	광 원 3 리 본부락 소개천일원
		제 2 반	대개천 일원
	명 개 리	제 1 반	명 개 리 명지, 본부락 일원
		제 2 반	조개리 일원
	율 전 1 리	제 1 반	율 전 1 리 상부흥동 일원
		제 2 반	하부흥동 일원
		제 3 반	시 장 일원
		제 4 반	양지마을 일원
		제 5 반	가진포 일원
	율 전 2 리	제 1 반	율 전 2 리 이현동 일원
		제 2 반	도룡동 일원
		제 3 반	생둔동 일원
	율 전 3 리	제 1 반	율 전 3 리 신흥동 일원
		제 2 반	낫은새목 일원
		제 3 반	새목, 문암 일원
	자 운 1 리	제 1 반	자 운 1 리 낡은새목 일원
		제 2 반	하조항등 일원
		제 3 반	상조항등 일원
		제 4 반	상조항등 일원
		제 5 반	갈곡, 운둔골 일원
	자 운 2 리	제 1 반	자 운 2 리 노양동 일원
		제 2 반	솔무처 일원
		제 3 반	전들 일원
		제 4 반	원자운 일원
	자 운 3 리	제 1 반	자 운 3 리 대곡동 일원
		제 2 반	상천동, 하천동 일원
	자 운 4 리	제 1 반	자 운 4 리 청개동 일원
		제 2 반	지병동 일원
		제 3 반	덕두원 일원
	방 내 1 리	제 1 반	방 내 1 리 상유동 일원
		제 2 반	하수유동, 양지동 일원
		제 3 반	자기동 일원
		제 4 반	삼리동 일원
		제 5 반	소구룬동 일원
	방 내 2 리	제 1 반	방 내 2 리 야개동 일원
		제 2 반	원심동 일원
		제 3 반	상여체동, 하여체동 일원
	방 내 3 리	제 1 반	방 내 3 리 송내동 일원
		제 2 반	질과질원 일원
		제 3 반	대굴운 일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과 행정담당	
연 락 처	033-430-2212

홍천군 공고 제2020-1978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산249번지
3. 도로길이 : 91m
4. 도로너비 : 6.0~17.0m
5.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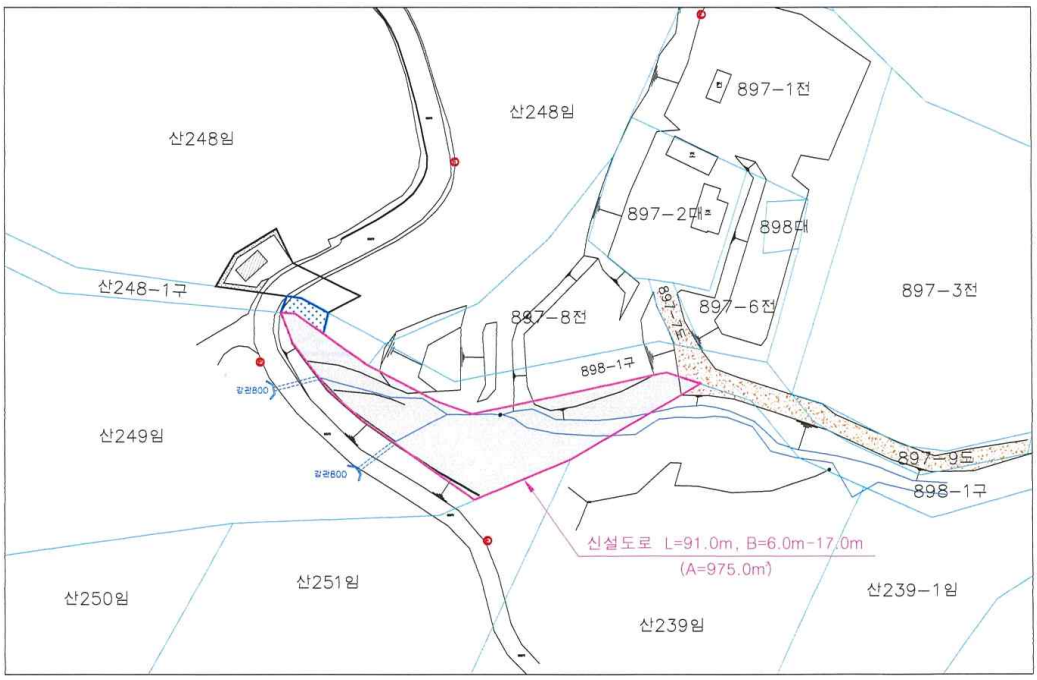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내촌면 와야리	산249	임	24,793	975	엄의웅 김정순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로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 ] 1 / 600, [●] 1 / 1,200

홍천군 공고 제2020-1990호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홍 천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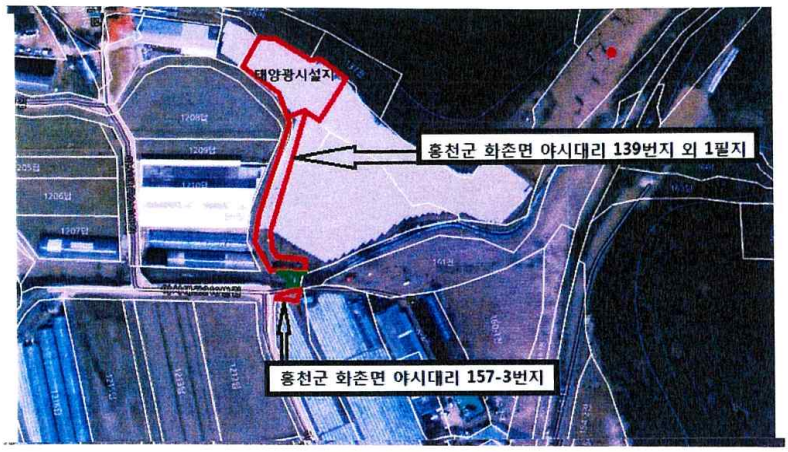
1. 사업명 :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139, 140, 157-2번지
3. 도로길이 : 96.75m
4. 도로너비 : 4m
5. 도로면적 : 387㎡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화촌면 야시대리	139	전	357	91	최계숙	
	140		3,550	266	최낙범	
	157-3		1,984	30	최경희	
계				38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2면중 제2면)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 1/1,200 , □ 1/600



30304-26822대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

홍천군 공고 제2020-1999호

아동급식카드 사업 수행 업체 모집 공고(안)

홍천군에서는 효율적인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하여「아동급식 카드 수행업체」를 공모하오니,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홍 천 군 수

1. 사업내용: 아동급식카드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급식 지원 및 대금결제·정산, DB관리, 카드 발급 등

2.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종료 전 평가를 통해 연장여부 결정)

3. 신청자격

가.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나. 유사사업 또는 공공사업에 경험이 있어 홍천군 아동급식사업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 사업체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0. 10. 29.(목) ~ 2020. 11. 12.(목)

나. 접 수 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아동친화드림팀(홍천군청 별관 3층)

다.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붙임 자료로 작성

라. 접수방법 : 공고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접수

5. 수행범위: 홍천군 읍·면 전역(10개 읍·면)

6. 제출서류

가. 홍천군 아동급식카드사업 수행신청서 1부

나. 아동급식카드사업 사업계획서 11부

다. 사업제안서(PT자료) 11부

라.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마. 기타 증빙자료 11부

7. 수행업체 선정

가. 선정기준

- 인력, 조직, 시설, 기술 보유 수준 및 급식카드 디자인

- 가맹점업체 관리 및 급식카드 발급·운영 능력 및 실현가능성
- 사업에 대한 이해와 운영 경험
- 선정 이후 사업진행시 요구되는 협조 사항에 대한 실행의지 등

나. 심 사 표: 붙임 참조

다. 선정방법: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사표에 의거, 심의 선정

라. 결정통지: 홍천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8. 기타사항

가.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업체는 추후 본 사업 등에 참여를 배제합니다.

라. 선정된 업체는 아동급식카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아동급식카드 발급관리 업체로서의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복나눔과 아동친화드림팀(033-430-2130)으로 문의하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홍천군 아동급식카드 수행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업 체 명</td><td colspan="2" rowspan="2"></td><td rowspan="2">대 표 자</td><td>성 명</td><td></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 rowspan="2">소 재 지</td><td colspan="2" row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팩스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실 무 자</td><td>직위</td><td></td><td>휴 대 폰</td><td colspan="2"></td></tr>
<tr><td>성명</td><td></td><td>e-mail</td><td colspan="2"></td></tr>
<tr><td>신청개요</td><td colspan="5">※ 아동급식카드 통합 관리·운영 방안 요약
→ 서술 또는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td></tr>
<tr><td colspan="6">상기와 같이 홍천군 아동급식카드 통합 관리·운영 수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직인)
홍천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6"><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1부
2. 사업제안서 11부
3.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기타 증빙자료 11부.</td></tr>
</table>

[붙임2]

과 업 과 제

1. 신청업체 개요
  - 회사의 경영이념
  - 재정운영 상태(증빙자료 첨부)
  - 사업수행실적(아동급식카드와 관련된 사업, 유사사업 또는 공공사업)

2. 운영방식
  - 가맹점 확보 및 급식카드 발급과 관리·운영에 따른 자사의 특징적인 프로세스 소개
  - 별도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범용성단말기 사용
  - 사용자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운영체계 및 시스템구성 시 현장의견 및 자치구 의견 수렴 계획
  - 사업 추진 일정

3. 카드디자인
  - 낙인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디자인 개선계획

4. 홍천군 아동급식카드 전용 전산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성 원리 및 사용법
  - 카드 신청, 충전, 정산방식 등의 운영
  - 급식카드 사용에 대한 통계(Big-Data)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 급식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 급식카드 이용제한 품목 및 한도금액 설정 등 운영 관리 체계 마련 방안
  - 기타 특기사항(타사와 구별되는 특징 등)

5.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관련 등
  - 카드수수료 이용 계획
  - 사업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 부담
  - 급식카드 무료 제작·발급

6. 상담지원
  - 업무관련 민원 발생 시 상담전담직원 배치

7. 기타 급식카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사업홍보 방안 등)

< 작성시 유의사항 >

가. 과업과제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나. 아동급식카드를 통합 관리·운영함으로서 이용 아동의 편의와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있음으로 취지에 맞게 내용을 작성

다. 카드 디자인은 일반카드와 구분이 되지 않으면서 아동이 사용하기에 적정하게 디자인 된 도안 제출

홍천군 공고 제2020–2000호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202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홍 천 군 수

1. 개별공시지가 공시내용
   가. 지가기준일 : 2020년 7월 1일
   나. 지가결정 필지 수 : 3,450필지
   다.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라. 개별공시지가 공시사항 : 토지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결정가격

2. 이의신청 방법
   가. 기간 : 2020. 10. 30. ~ 11. 30.(30일간)
   나. 이의신청 장소 :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각 읍·면사무소
   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우편, 방문접수 등)
   - 우편접수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 팩스접수 : (033) 430-2159
   - 방문접수 :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토지행정담당
   라. 이의신청 처리 : 감정평가사 검증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 후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결과 통보
   마. 문의사항 :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토지행정담당 ☎(033)430-2153

202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현황

(단위:필지)

구분 / 읍.면	조사대상			표준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3,450	2,564	886	2,328
홍천읍	465	339	126	334
화촌면	220	180	40	244
두촌면	150	146	4	157
내촌면	458	251	207	192
서석면	418	262	156	225
동 면	322	299	23	214
남 면	321	224	97	242
서 면	359	287	72	224
북방면	386	278	108	263
내 면	351	298	53	23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군수·구청장						

210㎜×297㎜(백상지 80g/㎡)]